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4 - 제4호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지방시대위원회) ····· 1

2.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10

3. 세컨드 홈 활성화 (기획재정부) ····· 16

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행정안전부) ····· 19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21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행정안전부) ····· 23

7.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 27

8.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29

9. 지역 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교육부) ····· 31

10.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관계부처합동) ····· 36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

1.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거주요건 폐지 (서울시) ····· 43

2.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 ····· 46

3. '스포츠 포인트제' 추진 (경기도) ····· 48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2019~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면제 사업 분석(나라살림연구소) ····· 53
2.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한국지방세연구원) ····· 56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국회입법조사처) ····· 58
4.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국회입법조사처) ····· 60
5.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다(국회미래연구원) ····· 64
6.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국회미래연구원) ···· 69
7.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국회미래연구원) ····· 72
8.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통계청) ····· 76
9. 인구감소 시대, 미래학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한국교육과정평가원) ····· 79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의 지원기준 관련 검토 필요사항(국토교통위원회) ····· 87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저조한 신규 가입률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 필요(환경노동위원회) ····· 92
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교육위원회) ····· 96

Ⅴ. 기타 참고자료

1. (서평) 시대예보 : 핵 개인의 시대 ····· 101
2. (기타)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105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지방시대위원회)

◇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 지방시대 4+10 이행과제 중점 추진 -

①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개시

②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 본격 추진

③지방도심 복합개발하여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본격화

④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24.12월)

⑤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⑥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 마련

1 시행계획의 성격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 '23.10.30.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완료

○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법정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당해년도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실천계획

2 시행계획의 구성

○ 지방정부의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의 '부문별 시행 계획',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의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 시도지사와협의·조정*하여 시행계획 수립

* 지방시대위원회가 시도-부처협의회 2회('23.11.14., '24.1.9.) 개최

○ 지방시대위원회와 각 시·도가 공동 주관하여 '2024년 시·도/초광역권 시행계획' 작성 방향에 대한 시·도 지방시대위원 및 주민의견 청취

* '24.1.16~2.5 시·도에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 개최

○ 법정시한(매년2.15.) 내 제출*된 시행계획(안)을 토대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안건을 작성하고,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24.4.4.)에서 심의·의결

*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제출

【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



□ '중점 이행과제' 핵심내용(4대 특구)

❶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투자기업 주도의 계획에 따라 '24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 세부방안 마련 추진

* 대구·부산·전남·경북 등 총 4개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접수('24.3월)

❷ (교육발전특구 도입)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역의 규제 개선 위한 법안 마련

* 1차 31건 지정('24.2월 광역지자체 6, 기초지자체 43), 2차 지정('24.7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법안 마련('24.下)

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관계부처 특구사업 등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중첩 적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지원

* 도심융합특구 지정·운영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24.4), 범부처 업무협약('24.上)

❹ (문화특구와 로컬콘텐츠) 지역 문화창조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24.12월)하고,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 100'을 집중 홍보하며, 新유형의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활성화 추진

□ 10대 중점 이행과제

❶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중점 추진

❷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이양사무 발굴과 체계적인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자치시도 특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 제도화 추진

❸ (초광역권 활성화)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및 초광역권 발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초광역권 활성화 본격 추진

* 초광역권 협력사업 실행력 제고방안 마련(~'24.6월), 초광역구축 특별위원회 구성·운영('24.3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유도 등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축지원 및 규제개선 과제 추진('24.7월~)

❹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과제 추진을 위해 반기별 이행 점검 및 현장방문 등도 본격화

❺ (현장규제 해소)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과제 발굴·개선 추진

* 부산·강원·충북·전남 4곳 특구 지정('24.4, 특구위), 특구 후보지 신규 선정('24.下)

❻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 규제·애로 해소 등을 포함한 첨단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2024.3),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전략인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 지원

❼ (디지털 재창조)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지역 2개를 추가 선정하여 '디지털 혁신지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24년 5천개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DX) 지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확충을 이행하는 한편, SW중심대학 17개를 신규 선정하여 디지털 인재 집중 양성

❽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지속 추진 및 주거·돌봄·일자리 복합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확대

❾ (지방재정 건전성·안정성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경제상황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성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이양사업(80개)의 책임있는 사업관리 강화

❿ (자치역량 제고) 지방재정부담 사업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의 기반 구축에 기여

첨부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개관 (추진 목표 및 전략)

서울	목표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
	전략	◈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 ◈ 권역별 특색있는 균형발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문화·관광 매력 콘텐츠 육성 및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
부산	목표	시민들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전략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기반 구축 ◈ 금융집적 및 첨단 디지털 금융·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조성 ◈ '인재-취업-정주'를 연계한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기반 조성
대구	목표	신공항 건설과 남부 거대경제권 기반 마련
	전략	◈ 미래신산업 중심 특성화 대학 육성 및 인재양성 ◈ 5대 미래신산업 혁신성장거점 조성 및 기획발전특구 지정 ◈ 글로벌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도시건설 본격추진
인천	목표	시민 중심의 도시경쟁력 있는 미래가치 기반 구축
	전략	◈ 시민 중심의 자치기반 마련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세계를 선도하고 지역가치를 확산하는 경쟁력 있는 특화도시 기반 구축
광주	목표	더 (살기·즐기기·기업하기) 좋은 기회도시 광주
	전략	◈ 시민이 주도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기회도시 실현 ◈ 기술기반 창업생태계 강화와 혁신 미래산업 지원을 통한 미래도시 도약 ◈ 청년이 머무는 도시, 더 따뜻하고 더 두터운 돌봄도시 광주
대전	목표	미래개척·문화활력·생활안정·공간혁신의 일류경제도시 대전
	전략	◈ 창업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창의·도전 생태계 구축 ◈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 혁신을 통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 다양한 관광콘텐츠 강화로 대전의 다채로운 매력 증진
울산	목표	일자리 넘치는 지방시대 선도도시 울산 만들기
	전략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반구대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 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 보전
세종	목표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전략	◈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법적 기반 마련 ◈ 양자기술 등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적 혁신도시 조성 ◈ 한글, 금강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발전 도시 육성

경기	목표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고,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 창출
	전략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견인 ◈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으로 더 고른 기회제공 ◈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센터 및 통합추진단 운영
강원	목표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
	전략	◈ 지역경제 선도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 5대 관광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 미래선도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충북	목표	중부내륙시대 개막과 대한민국의 중심 우뚝 충북
	전략	◈ 미래 100년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충북 경제성장 발판 마련 ◈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 노력을 통한 중부권 거점 공항 도약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 자리매김
충남	목표	대한민국 성장과 나눔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
	전략	◈ 미래성장 동력확보 및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을 통한 풍요로운 삶터 조성 ◈ 도민의 품격있는 삶의 질 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확보
전북	목표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
	전략	◈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특별자치 실현 ◈ 누구나 살기 좋은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한 재정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과 특화발전으로 도민 복지 향상
전남	목표	최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성장 기반 및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구축
	전략	◈ 최첨단 전략산업(이차전지, 바이오, 데이터 등) 허브로 도약, 미래 먹거리 확보 ◈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전남 실현 ◈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 건설
경북	목표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 수립·시행,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	◈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차등분권 추진으로 정책성과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 ◈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로 지역인재 육성 기반 강화 ◈ 민간투자-대학·기업 연계로 지역주도 핵심 전략기술 발굴 및 첨단산업 선점
경남	목표	도민과 함께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
	전략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 ◈ 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 다시 찾고 싶은 경남 관광 환경 조성 ◈ 전략적 투자 유치,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재도약
제주	목표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전략	◈ 도민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 혁신성장, 청정산업, 특화발전으로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

□ 2024년 추진전략

◈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특별자치 실현 (특례 발굴 30건)
◈ 누구나 살기 좋은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한 재정력 강화 (재정자주도 2%p 향상)
◈ 지속가능한 성장과 특화발전으로 도민 복지 향상 (1인당 GRDP 4%p 성장)

□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계획

전략	주요 핵심과제별 중점 추진 세부과제
자주, 자립, 자강의 특별자치 전북 (지방분권)	▪ (자율적 자치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30건), 지역맞춤형 시군특례 발굴(10건), 강화된 자치조직권을 반영한 조직개편안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업방안 마련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 구축(세미나 1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간담회, 세미나 등 2회)
인재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요람 전북 (교육개혁)	▪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AI·디지털 기반 학생중심 전북미래학교 운영(전체 학교 중 30% 이상), 글로컬대학 공모·지정(2건) 등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및 참여 학생 취업률 향상(전년대비 5%p 상향), 유보통합을 위한 협의회 운영 등
일자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엔진 전북 (혁신성장)	▪ (기회발전특구 등 성장 동력 확충) 전북특별자치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새만금 이차전지 연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 (글로벌 선도형 전북과학기술 진흥)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연구회 운영(10회), 연구기관-수요기관 공동개발 지원(3건)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도민과의 약속, 차별화된 특화발전	▪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및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보고서 준비 및 부처건의 등 ▪ (지역주도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활력 넘치는 사람 살기 좋은 전북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시군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 및 세미나(2회), 이전공공기관 선점을 위한 유치추진단 운영(2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106,000건),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구축(1개소) 등

2.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로 스마트농업 확산 촉진**

1 추진배경

○ 글로벌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농산업 생태계 강화** 추세

-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수급 불안, 고령화 등 농업의 **도전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생산성·소득향상**에 기여*

* 스마트온실 도입 농가는 단위생산량 32% 증가, 노동시간 8% 감소, 면적당 농업소득 46% 증대되는 성과('22,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갤럽)

- 인공지능·데이터·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융복합 **전문기업**이 등장하여 **농업 스마트화 주도**
- 선진국은 **전후방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초점

* 농업인프라, 연구개발, 고효율 농자재의 보급, 디지털·자동화 기술도입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농업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23, OECD-FAO)

○ 스마트농업 **고도화**와 **민간 주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요구

-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농업**의 **경제기여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농가인구) '00 401만명→'22 217, (경지) '00 189만ha→'22 153, (GNI기여) '00 3.3%→'22 1.4

- **스마트농업 기술**은 **정책사업 중심** 보급, **농가 자발적 도입**은 **저조**

* 소규모 영농구조로 인해 초기 투자가 필요한 스마트농업 전환 시 규모의 경제 제한적

-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대한 제도·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필요

2 스마트농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전략 1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수직농장 지원 제도 정비	☑ 산업단지 입주 허용 ☑ 농지 위 설치 허용 ☑ 경제성 개선 위한 정책지원 강화
②	스마트팜 관련 농업경영체 지원 강화	☑ 전문기업의 사업 가능 범위 확대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완화
③	ICT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 센서·구동기·복합환경제어기(2월) ☑ 주요 기자재 환급 대상 확대 추진
④	스마트농산업 발전 거버넌스 강화	☑ 중앙-지자체 연계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 스마트농업 육성 민관 협의체 운영

전략 2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①	데이터 · AI 기반 솔루션 확산	☑ 현장·기업수요 반영 핵심기술 개발·표준화 ☑ 주요 생산지 중심 데이터 솔루션 확산
②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 지정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육성
③	기술기반 유망기업 집중 지원	☑ 민간투자 유치·경영실적 우수 기업 지원 ☑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3 세부 추진 방안

전략 1.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수직농장 지원 제도 정비

○ **산업단지 입주 허용**: "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자격 부여를 관계부처(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하여 추진('24)

- 업종 확대에 따른 현장 혼란 방지 및 입주지원 용이하도록 수직농장 판단기준을 명확히 마련 후 법령개선

*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

○ **농지 위 설치 허용**

- **(컨테이너형)**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8년 → 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 7월)

* 농지법 개정('24.1월)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됨(8년)

** 수직농장 업체 대상 허용기간 조사 결과 평균 16년으로 응답('24.1월)

- **(건물형)** 일정 지역 내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하여 설치 허용

* 스마트농업법령에 수직농장 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선(안)
▸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전용을 거쳐야 건축물 설치 가능	⇒	▸ 일정 지역 내 농지이용행위 인정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 - 농촌특화지구(농촌공간계획법)

○ **수직농장 경제성 개선 위한 정책지원 강화**

- ▶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25)
- ▶ 우수종묘증식보급사업('25)
- ▶ 혁신밸리 실증단지 테스트베드('24, 6개社)
-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신축·기자재)('25)
- ▶ 스마트팜 종합자금('25)



혁신밸리상주 수직농장 실증 인프라

② 스마트팜 관련 농업경영체 지원 강화

○ **전문기업의 사업 가능 범위 확대**

- 농식품부장관이 지정(스마트농업법령)한 '스마트농업 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 범위 확대('24.下)

* 例: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개발·제조 및 컨설팅 등 사업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출 유망한 기업을 지정(세부지정기준 고시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완화**

-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24.上)

③ 스마트팜용 ICT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 센서·구동기·복합환경제어기(2월)

○ 주요 기자재 환급 대상 확대 추진

④ 스마트농산업 발전 거버넌스 강화

○ **중앙-지자체 연계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중앙단위 '25~'29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 계획과 연도별시·도계획을 연계수립하여 정책효율성 향상('25~)

* 「스마트농업법」('24.7월 시행)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확보

○ **스마트농업 육성 민-관 협의체 운영**

- 중앙-시·도 스마트농업 협의체를 구성('24)하여 정기적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시·도별 계획과 국가지원사업 연계 강화

*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시·도계획 등 수립 시 정책조율 및 정보공유

-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정책 과제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24)

전략 2.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 현장·기업수요 반영 핵심기술 개발 및 기자재 표준화

○ 주요 생산지 중심 데이터 솔루션 확산

②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 지정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25)

○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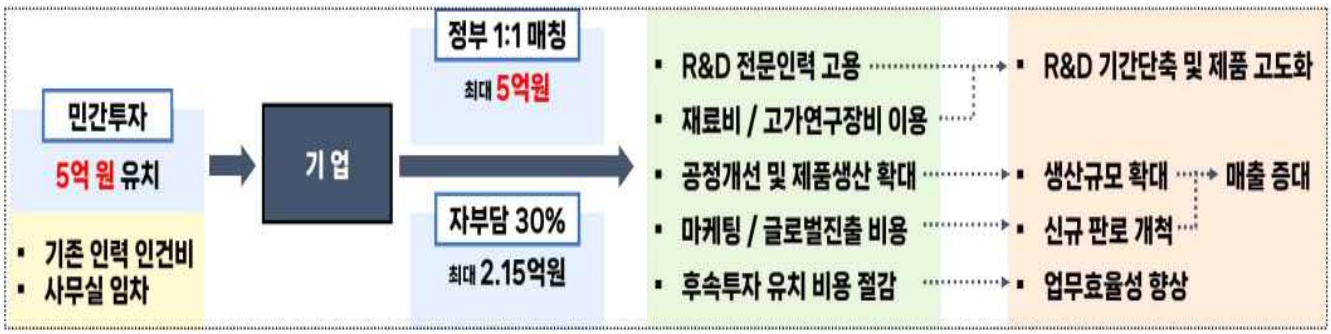
▶ **첨단기술공동실습장**('24: 전국 24개소, 1,100명 교육)
농고·농대생, 청년·일반농, 농고교사 대상 데이터분석, 환경제어 등 스마트농업 교육

▶ **현장실습교육장**(전국 120개소)
품목별 영농기술(재배환경 조성, 병해충 관리 등), ICT 등 경영교육

▶ **2040 스텝업 기술교육**(120명)
중급 수준의 2040세대 농업인 대상 기술교육, 현장방문 지도, 전문가 교육

③ 기술기반 유망기업 집중 지원

○ 민간투자 유치·경영실적 우수 기업 지원



○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4 분석의견

○ 전북자치도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 장수군 등 전북 동부권과 서부권에 거점을 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6곳(20.8ha)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0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30ha 추가 조성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취업할 수 있도록 특화된 이론·실습 중심의 장기보육 과정을 지원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모집인원 : 52명(매년)
- 교육내용 : 품목별 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장비 활용·제어기술 등
- 교육기간 : 20개월/입문과정(2개월), 교육실습과정(6개월), 경영형실습과정(12개월)
- 지원혜택 : 교육비 무료, 청년창업 스마트팜 종합자금 30억 한도 지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수료 후 임대형 스마트팜(김제) 우선 입주 지원

**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 모집인원 : 30명-연간 10명 내외를 3년 순환주기로 운영/창업보육 수료자 우선
- 임대기간 : 3년(재배작물 자율선택) → 1인당 임대료 33만원/년 정도

○ 전북자치도의 벼농사 생산비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순수익은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스마트팜을 통한 농생명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통계청,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4.7.26.)에 따른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1.2.19.)에 대한 개정(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자,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세컨드 홈 활성화 (기획재정부)

◇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 추진배경

○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구확대에 착안 → '세컨드 홈' 취득시 세제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해 '세컨드 홈' 활성화

2 주요내용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 경감시 생활인구 확충 가능

❶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경,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 가능

❷ (주택요건) 특례지역 內 주택 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당

❸ (소유주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치계획)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

○ (종부세·양도세)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24.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24.4월)

○ (재산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및 시행('24.6월)하여, '24년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과세기준일 : '24.6.1일, 부과 : '24.7·9월)

첨부 1 세컨드 홈 특례 적용여부



※ 적용사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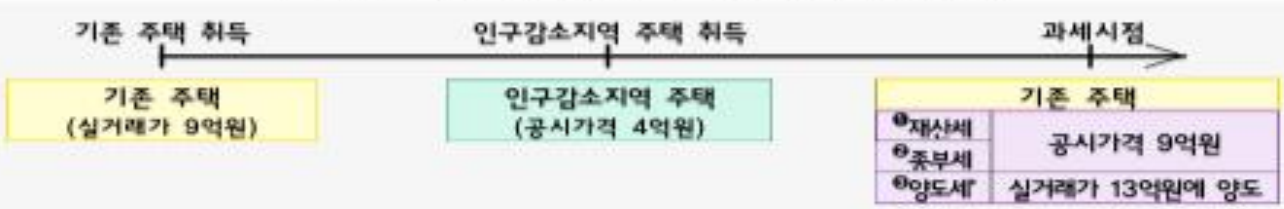
- 수도권 12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금년 5월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주택(공시가격 4억) 구입한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
-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씨는 1세대 2주택자로 취급(세컨드 홈 특례 적용 x)
- 인구감소지역 전남 E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씨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

□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예상

【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

재산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종부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상세내용 참고2)】



*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령자, 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 (세부담 경감)

❶ (재산세) 〈現〉 305만원 → 〈改〉 211만원 : △94만원

❷ (종부세) 〈現〉 75만원 → 〈改〉 4만원 : △71만원

❸ (양도세) 〈現〉 8,551만원 → 〈改〉 22만원 : △8,529만원

첨부 2 세컨드 홈 세제특례에 따른 세부담 변화(예시)

※ 가정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신규 취득시
- 기존 1주택 : 취득가액 9억원, 양도가액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 신규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 공시가격 4억원
- 만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재산세

□ 기존 1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현행	개정
▸ 기본 세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특례세율 적용 (과표구간별 △0.05%p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 세부담 변화

현행		개정	
기존 1주택	신규 1주택	기존 1주택	신규 1주택
229만원	76만원	135만원	76만원
305만원		211만원	
△ 94만원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현행	개정
▸ 기본공제한도 9억원 적용 ▸ 세액공제 미적용	▸ 기본공제한도 12억원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 세부담 변화

현행	개정
75만원	4만원
△ 71만원	

양도소득세

□ 기존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현행	개정
▸ 기본 세율 적용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	▸ 비과세 한도 12억원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

□ 세부담 변화

현행	개정
8,551만원	22만원
△ 8,529만원	

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기획재정부)

◇ 중점 투자방향 : 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1 관계규정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1항 및 제2항

2 중점사항

○ '25년 예산안,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책임성** 제고

○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등 **4대 중점** 투자 강화

3 주요내용

《4대 중점과제》

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R&D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② 약자복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③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④ 튼튼한 국가안보 확립

- 국방·경제안보 : 첨단강군 육성,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
- 안전 사회 지원 :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이외 역점 지원 사업》

① R&D 전 분야에서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 · 첨단바이오 · 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 중심 **투자 규모 대폭 확대**

②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 · 교육부담 경감, 일 · 가정 양립** 지원

③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한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중점 투자

④ **지역거점 중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광역교통 · 교육 · 의료 · 문화** 등 생활여건 획기적 개선

⑤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 지역의료 강화** 뒷받침,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 적극 지원

※ 재정운용 혁신 지속

- 사업현장 수요 반영 (현장 · 성과중심), 부담금 정비 및 규제혁신 뒷받침
- 사업타당성 재점검,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 축소 · 폐지 검토)
- 전달체계 개선, 투자재원 다각화 노력 지속 (효율적 재정관리)

4 향후일정

○ 예산요구안 기재부 제출(~5.31. / 각 부처) → 정부예산안 편성(6~8월) → 국회 제출(9.2 한)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전북 국가예산 확보현황 : ('23) 9조 1595억 ⇒ ('24) 9조 163억 (1.56% 감소)

○ ['24.3.27.] '25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 공개 ('24.3.기준 총 562건, 국비 7200억 원 정도)

* 총 6개 분야 포함 :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 새만금, 기반시설, 환경복지 등

○ [~'24.4.] 주요 핵심사업 (100건 정도) 선정 및 예산확보 활동

* 선정기준 : ①도정 목표 달성위한 핵심사업 ②정부 투자방향에 맞는 지역사업 ③지역국회의원 관심사업 ④시군 건의사업 등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 **선거사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개표 등 장시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고자 함**

1 관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공고('24.3.7.)

2 추진배경

○ 선거사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개표 등 장시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추가 휴무를 부여하도록 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총무과)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2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관련 내용 개정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

㉑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첨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선거사무 종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2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 및 같은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 3. 「공직선거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원 ②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휴무에 1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생 략)	제4조의3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행정안전부)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원시설세를 지원 받지 못하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 30km 소재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1 관계규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4.2.20.)

2 추진배경

○ 기존의 「지방재정법」은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해당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3 주요내용

○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신설).

○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 개정안 부대의견 】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하여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전명	광역 지자체	원전 소재지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기초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미수혜 지자체
월성원전	경북	경주시	포항시	
고리원전, 새울원전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양산시
한울원전	경북	울진군	봉화군	
	강원			삼척시
한빛원전	전남	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하나로 원전	대전			유성구

【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기준 】

-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지자체(이하 '광역지자체') : 100분의 15
- 원전소재지 기초지자체 : 100분의 65
- 광역지자체에 있는 원전 반경 30km 이내 기초지자체(원전소재지 제외) 100분의 20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사회재난과]

○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에서는 도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고창·부안군)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 시설 및 방사능 누출 대비 훈련을 위한 장비 마련을 위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이외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의 지자체에 지원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으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광역지자체내의 비상계획구역만 해당되어 경상남도 양산시, 강원자치도 삼척시, 전북자치도 고창·부안군 등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또는 행정안전부에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아울러,

○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함

첨부 「지방재정법」 개정조문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개정 2014.5.28.>)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12.31., 2021.12.7.>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4.2.20.>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

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2.2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2.20.>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제2항에서 이동 2024.2.20.>

7.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1 추진배경

○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 수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 '24-'25년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모델 정립 및 제도 운영 점검

* '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권자 14.6만명(급여이용자 12.7만명, 미이용자 1.9만명)

2 주요내용

○ 개인예산제 추진 방향 등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3년 모의적용, '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4.06.부터 8개 지자체에서 210명 대상으로 약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예정

- **(대 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 **(지원내용)** 활동지원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선택 이용
- **(사업예산)** '24년 국비 965백만원 (지자체보조 357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이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이 가능함

※ **주류·담배 등 지원 배제 항목 외**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폭넓게 허용**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복지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 시사점 및 검토의견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을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함.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246만 2천여 명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3만여 명으로 전북 인구의 7.4%**로 조사됨

○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주어진 예산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등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급여 이용 효율화에 기여 할 수 있음. 단,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용법 숙지 등 일선 현장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23.10.~'24.02.예정)'을 실시하여 4곳의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참여자 100명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여 사업의 정교화를 꾀하고 있음

○ 장애인 개인예산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공공서비스 다양화 및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음.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용 가능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올해 시범사업은 4월 중 참여 지자체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도내 시군의 참여 독려 및 대응** 필요

< 공모개요 >

▸**(사업기간)** '24 ~ '25년(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예정)
▸**(선정규모)**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1,322백만원(국비 965, 지방비 357) ※ 1개 지자체당 165백만원
▸**(추진일정)**

계획공모		신청접수		선정심사		선정		사업착수
공모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서면심사	➡	선정지역 확정통보	➡	· 참여자모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3.29.		4.1. ~ 4.12. **~4.24.(추가모집)**		4월 중		5월 중		6월~

8.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스포츠 참여 향유 및 '스포츠권' 보장 목표

1 관계규정

○ 「스포츠기본법」 제8조

2 추진배경

○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권' 신장 등을 포함한 스포츠진흥 방향, 분야별 시책을 포괄하는 법정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스포츠로 국민건강 · 지역활력 제고**

- 운동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대('23년 1만 명 → '28년 50만 명), 생애주기별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등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 유휴공간 활용 체육시설 조성 지원, 스마트 경기장 구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확충('27년까지 150개) 등 스포츠시설 접근성 개선

* 공원·폐교·그린벨트 등 유휴공간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 장애 노인을 위한 경로당 등 연계 체육교실 운영

○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훈련시설 구축,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 등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안정화
- 예방교육, 선진적 지도방식 개발, 상시 상담 지원 등 공정 스포츠 환경 조성
-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및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생활안정 지원

* 급여공제, 체육인 전용 목돈마련 저축(적립형 공제),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 등 추진

○ **함께 성장하는 생활 · 전문스포츠**

- 단계별(등록-예비지정-지정)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5만 스포츠클럽 육성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검색·가입·활동까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제공('23~'25년), 클럽별 운영 종목, 주요 활동 시간, 실력 수준, 주 활용 시설 등 정보 제공

-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 확대, 학교 체육시설 확충 등 학교스포츠 활성화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국가 신성장동력, 케이(K)-스포츠**

- (가칭)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기술·신용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등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 골프 대중화 추진, 스포츠관광 활성화 등 융·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 레저스포츠(육상, 항공, 해양)와 웰니스 콘텐츠 간 결합을 통한 지역특화 치유 관광 프로그램 발굴 지원 (①스포츠+산림치유, ②스포츠+해양치유 등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국제협력 활성화 등 세계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종목단체 선진화, 지방체육회 자생력 제고 등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법정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 등을 참고, 기본계획 수립시 체육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그리기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으로 도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에 걸맞는 스포츠 친화 도시로 발돋움 노력 필요

9. 지역 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교육부)

◇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현

1 추진 배경

○ 인구소멸지역 특성화고의 입학자원 축소, 동일 지역 정착 경향이 높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로 지역 내 인력난 증가

○ 표준 모델에서 벗어나 협약을 통해 교육과 산업계 현장, 지역사회 모두가 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필요

2 협약형 특성화고 핵심 내용

○ **교육플랜 : 협약을 통해 구현하는 학교 비전**

- (교육 혁신) 주체간 협업을 통해 교육과 산업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교육
- (학생 진로) 협약 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로서의 성장경로 및 진로 지원 계획
- (동반 성장) 협약형 특성화고의 성과를 지역 교육력 제고로 확산할 수 있는 계획

○ **거버넌스 : 교육 플랜 이행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각 주체의 구체적인 역할 명시
- (리더와 교원) 학교 혁신을 이끄는데 필수적인 리더와 교원 확보 방안

○ **인프라 :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및 자원 투자 계획 등**

- (시설·설비)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시설·설비 구비 계획
- (투자) 각 협약 주체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 (타 사업과의 관계) 교육 플랜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관계 설정(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중심 사업 및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

○ 협약조건 : 운영 기간과 협약 이행 담보 방안 등

- (운영 기간) 최소 3년에서 5년
- (책무 확보) 주체별 협약에 대한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컨소시엄 내 구체적인 이행 담보 방안과 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3 선정 절차 및 지원사항

○ 선정 절차 : 24년 컨소시엄 **10개 이내 선정**

- (방식) 1단계 서면 평가, 2단계 현장평가(발표)
- (선정 후 확정 협약)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사항이 반영된 확정 협약 및 육성계획서 재제출
- (육성위원회·평가) 지역·산업계 인사, 직업교육 전문가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위원 구성,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 사항 : 재정 지원과 자율성 부여 추진

- (특별교부금) 선정 시 **총 35 ~45억원 이내 지원**
- (보통교부금) 갱신 시 운영비 지원
- (제도적 지원)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자율, 규제 완화 발굴·지원 등
- (기타) 산업계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인센티브 발굴, 브랜드 홍보 등

4 성과관리 및 향후 일정

○ (추진 체계) 교육부(기본계획 총괄), 위탁기관(육성위원회 운영 지원 및 성과 관리, 네트워크 지원 등), 육성위원회(선정 및 성과평가 등)

○ (성과 평가) 협약 시 제시된 목표치 등에 대한 이행 평가(중간, 최종)

○ (향후 일정) 공모(~'24.3월) 및 심사·선정(~'24.5월)

- 지역별 신청 현황

<지역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신청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수	1	4	4	2	1	3	3	4	3	1	2	1	6	1	1	37

* 학교(분야) ; 전북하이텍고(스마트팩토리), 한국치즈과학고(치즈 바이오)

≪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교육협력추진단, 창의인재교육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2023.5.16.)에서 의원 대표 발의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시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현장실습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가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단체가 중심이 되어 **특성화고와 지역기업을 행·재정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조례 제정 검토**

첨부 1 비전 및 추진방향

협약형 특성화고란?

◈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비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추진 방향

협업	+	다양성	+	책무성
지역 거버넌스		자율적 디자인		협약 이행 책임

추진 전략

- 산학 융합: 교육과 산업의 벽을 허물어 현장성 있는 교육
- 명확한 진로: 확실한 학생 진로와 성장경로 설계 지원
- 혁신의 중심
- 동반성장: 지역 및 다른 특성화고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 인성과 실력: 인성과 실력(기초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학생

지역 역량 활용: 연구소, 대학, 광역/기초 지자체, 산업체, 인자위, 혁신지구 등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❶ 학생은? 입학부터 졸업 후에도 진로 설계, 지역에서 취업하고 지속 성장
❷ 학교는? 외부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학교 부담은 줄이고 현장성 있는 교육 제공
❸ 지역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조기 확보하여 지역 활력 제고

첨부 2 평가 주안점

평가 요소	평가 주안점
교육플랜 (40점)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인재 분야, 비전 및 목표는 지역 및 국가의 필요성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가? – RISE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과의 부합성 등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교육 플랜은 협약 주체간 합의와 소통에 의해서 수립되었는가? – 플랜 수립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 등 • 협약형 특성화고의 교육 플랜은 단계별로 교육과 산업, 유관기관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게 끔 구성되었는가?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의 과감한 혁신성이 보이는가?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의 진로 설계 및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학생의 협약기업 등 취업처 보장 및 중도탈락자, 진로 미결정자 축소 계획 – 졸업 후 지역 대학 등의 후진학 기회 마련 및 정주 여건 제공 등 – 우수 취업처(규모, 고용안전성, 건전성 등)가 확보(약정)되어있는가? • 협약형 특성화고의 성과를 지역 교육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가? –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의 상생, 동반성장 가능성
거버넌스 (40점)	•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은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가? – 각 주체별 역할이 명확하고 충분한가? •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특례) •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식은 적절한가? –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하도록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있는가? – 단위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책임성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적절한가? – 학교장 임용 방식, 성과평가 및 보상 부여 • 혁신을 이끌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적절한가? – 교원(산학겸임교사) 확보·배치, 교원(산학겸임교사) 재교육 방안 –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보상 방안(인센티브)
인프라 (10점)	• 협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시설 및 자원 배분 계획은 적절한가? •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각 주체의 투자지원 계획은 적절한가?
기본사항 (10점)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은 성과를 달성하기에 적정한가? • 협약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는 적정한가? – 협약 점검의 내·외부 통제 가능성 – 협약 이행 지표의 적절성 •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과 보완 방안은 갖추어 졌는가? • 계획 내 포함된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 종료 후 학교 운영의 계획은 세워졌는가?
가점(+α)	• 컨소시엄 주체 내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자체, 교육청 포함 및 연계 여부 • 컨소시엄 주체 내 RISE 참여 지자체 포함 및 연계 여부 • 컨소시엄 주체 내 교육발전특구 참여 지자체 포함 및 연계 여부

※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 가능

10.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관계부처합동)

◇ 민생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50%로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 육아시간 사용 확대
◇ 긴급 초과근무 실질적 보상,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1 추진배경

○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

2 주요내용

○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 근속승진 개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특별승진사유 추가, 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 인사교류기간확대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 개선

-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 휴가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 교육기회 확대, 국외 훈련 신설, 연수·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 재해예방 체계 확립, 마음건강 보호,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민원 공무원 우대,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 마련

○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 급량비 인상, 행사 차출 경비기준 표준화,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첨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주요내용**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table>
<tr><th>구분</th><th>현 행</th><th>개 선 안</th><th>비고</th></tr>
<tr><td rowspan="2">①근속승진 개선</td><td>○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직렬별로 근속승진후보자의 40%로 제한</td><td>○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직렬별 근속승진후보자의 50%로 확대</td><td>국가직
지방직</td></tr>
<tr><td>○ <u><신설></u></td><td>○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td><td>국가직
지방직</td></tr>
<tr><td>②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td><td>○ 9~6급 : 5년 ○ 5~2급 : 7년
○ 연구·지도사 : 10년
<table><tr><td>구 분</td><td>9급</td><td>8급</td><td>7급</td><td>6급</td><td>5급</td><td>4급</td><td>3급</td><td>2급</td><td>연구지도직</td></tr><tr><td>현행</td><td colspan="5">5년↑</td><td colspan="4">7년↑</td><td>10년↑</td></tr><tr><td>개선</td><td colspan="5">4년↑(△1년)</td><td colspan="4">변경없음</td><td>9년↑(△1년)</td></tr></table></td><td>○ 9~6급 : 4년 ○ 5~2급 : 7년
○ 연구·지도사 : 9년</td><td>국가직
지방직</td></tr>
<tr><td>③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td><td>○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 최저연수 13년
<table><tr><td>구분</td><td>9급→8급</td><td>8급→7급</td><td>7급→6급</td><td>6급→5급</td><td>5급→4급</td><td>연구지도직</td></tr><tr><td>현행</td><td>1년 6월</td><td>2년</td><td>2년</td><td>3년 6월</td><td>4년</td><td>5년</td></tr><tr><td>개선</td><td>1년</td><td>1년</td><td>1년</td><td>2년</td><td>3년</td><td>3년</td></tr></table></td><td>○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 최저연수 8년</td><td>지방직
*국가직 기시행</td></tr>
<tr><td>④특별승진 사유 추가</td><td>○ 규제혁신, 민원업무 개선, 국정과제, 사회복지, 격무기피 업무 등 탁월한 기여·실적 거둔 공무원</td><td>○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추가</td><td>지방직</td></tr>
<tr><td>⑤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td><td>○ <u><신설></u></td><td>○ 재난안전분야 등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 도과 후 전보시 본인 희망 반영 등 명시적 규정</td><td>지방직</td></tr>
<tr><td>⑥인사교류기간 확대</td><td>○ 최대 3년</td><td>○ 최대 5년으로 확대</td><td>지방직
*국가직 기시행</td></tr>
</table>

2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 개선

구분	현 행	개 선 안	비고
①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국가직 지방직
②가족돌봄 휴가 확대	○ 다자녀(2자녀 이상) 공무원에 자녀 돌봄휴가 유급 3일 부여	○ 셋째 자녀부터 유급 1일씩 추가	국가직 지방직
③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1년~2년 미만 : **12일** 2년~3년 미만 : **14일** 3년~4년 미만 : **15일**	○ 1년~2년 미만 : **15일** 2년~3년 미만 : **15일** 3년~4년 미만 : **16일**	국가직 지방직
④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저축연가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폐지**	국가직 지방직
⑤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 연가사용 **7일 전 자기결재 가능**	○ 조퇴·외출 시 **사유 미기재** ○ 연가사용 **4일 전 자기결재 가능**	국가직
⑥대체휴무 권고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받음**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휴무 사용 권고**	지방직

3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구분	현 행	개 선 안	비고
①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 **전공 선택** 시 **직무관련성** 필요	○ **전공분야** 폭넓게 인정 * (예시) 행정 → 인문계 전반, 과학기술 → 이공계 전반	국가직
	○ <신설>	○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위탁전형'에 지방공무원도 지원 가능**	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 <신설>	○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	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②국외훈련 신설	○ <신설>	○ **청년세대 특화 국외훈련** 운영	국가직
③연수휴직 기간 확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등에서 연수할 때 **2년 이내** 휴직 가능	○ 학사학위 없는 자의 학사 취득 목적인 경우 **4년 이내 허용** ※ 석·박사 취득목적 등은 현행 2년 유지	국가직 지방직
④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완화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국가직 지방직
⑤민관 교육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 폐지	○ 광역지자체 14시간, 기초지자체 7시간 이상 집합교육 의무이수	○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	지방직

4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구분	현 행	개 선 안	비고
①재해예방 체계 확립	○ <신설>	○ 기관별 재해요인 점검·진단 ○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 구성**	국가직 지방직
②마음건강 보호	○ **국가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 <신설>	○ **국가직·지방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 심리재해 위험군 전문의 진료비 지원	국가직 지방직
③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 **일반직 위험직무순직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부 심의 필수** ○ 공무원이 순직으로 특별승진하더라도 **승진 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 지급**	○ 일반직 위험직무순직자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부 심의 생략 가능** ○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 지급**	국가직 지방직
④민원 공무원 우대	○ <신설>	○ 특이민원 담당자에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월 3만원) 지급**	국가직 지방직
⑤민원 공무원 보호	○ <신설>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법적 대응 내용**이 포함된 **지침 배포** ○ 민원서비스평가 중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 기준 강화**	국가직 지방직

5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구분	현 행	개 선 안	비고
①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 주말·공휴일 근무 시 **일4시간·월57시간 초과근무 인정**	○ 국가 행사 지원 등으로 주말·공휴일 근무 시 **일8시간·월100시간 초과근무 인정**	국가직 *지방직 기시행
②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 사무실 외 장소에서 긴급 현안 처리 시 **사전승인**에 한해 **초과근무 인정**	○ 사무실 외 장소에서 긴급 현안 처리 시 **사후승인**의 경우에도 **초과근무 인정**	국가직

6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구분	현 행	개 선 안	비고
①급량비 인상	○ 급량비 1식 단가 **8천원**	○ 급량비 1식 단가 **9천원**	지방직
②행사 차출 경비 기준 표준화	○ **별도 규정없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음**	○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	지방직
③출산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 자녀출산포인트를 '맞춤형복지 기준액'에 포함하여 산정	○ **자녀출산 포인트**는 **'맞춤형복지 기준액'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 편성 가능**	지방직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1.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거주요건 전격 폐지(서울시)

◇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

1 추진배경

○ 저출생 극복을 위한「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들의 교통 이동 편의성 제공 및 자격요건 완화

※ 기존 자격요건 :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2 주요내용

○ (근　　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시 행 일) 2024. 3. 15.

○ (개정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포인트 지급

사업명	당초		개선
임산부 교통비 지원	❶ 신청일 기준 시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❷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유지

○ (교통수단) 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② 택시 ③ 자가용 유류비 ④ 철도(기차)

○ (이용지역) 제한없음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기타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다산콜재단)

3 기대효과

○ 초저출생 시대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증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보건의료과)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교통비 사용가능 포인트 70만원 지급) 외에도, 경기도(병원 1회 방문시 5만원 씩 최대 30만원 지원), 인천시(4월부터 신청자 모집 후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예정), 부산시(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운영, 월 4만원 내 할인), 충남(임산부 전용 구급차 이동서비스) 되고 있음

○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북자치도의 경우 **출산 취약지역** 7개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이 **임산부 대상 이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산전 진찰 회당 4만원(최대 12회), 분만 시 10만원, 최대 58만원까지 교통비용을 지원하며, 임산부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액을 지급함

○ 동 사업에 대한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94.2%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던 만큼,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출산 취약 지역에 한정된 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 타 지자체 임산부 교통편의 증진 사업 사례들을 참고**하여 친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

※ **각 광역 지자체 임산부 교통비 요금지원 사업('24년)**
- **서울: 교통비 70만원 지급,** 임신·출산한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 70만원 포인트 지급
- **부산: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 대상, 택시이용요금의 35% 이내 신용카드 월 4만원 내 할인지원(사용횟수 제한없음)
- **인천: 임산부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연중)
- **충남:** 임산부 및 생후1년 미만 영아 병원 이송및 귀가 **구급차서비스 제공(연중)**
- **대전:** 임산부 대전사랑카드 소지 후 **택시지원금 제공**(월 4회 또는 2만원 내)

첨부 서울·부산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www.seoulmomcare.com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2022. 7. 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내용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BK기업) 카드 중 택1
※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용 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02-120

부산 마마콜 임산부 콜택시

똑똑한 lucky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택시비 최대 **65%** 할인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운행을 시작합니다!

마마콜 전용앱 설치후 승인요청 ▸ 마마콜 이용자 승인 확인 ▸ 앱을 통한 차량 배차 신청

이용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

이용기간 임신 : 승인일~ 출산예정일 + 1개월
출산 : 승인일 ~ 출산일 + 1년

이용요금 전체 택시비의 35%결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 사용불가)

지원내용 월 40,000원 한도 / 무제한

시행시기 2024년 3월

2.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경상북도)

◇ **자녀 돌봄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확대(0세~5세 → 0세 8세까지), 보육휴가 신설 및 유연근무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1 추진배경

○ 맞벌이 부부 증가, 눈치 보기 등 경직된 공직문화로 돌봄시간 부족에 따라 가정·돌봄친화 근무환경 조성 요구 증대

2 주요내용

○ (근　　거)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 (내　　용)

-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사용률) 주 2일 의무 사용 ('23년 사용 권장 : 평균 주 0.7일 사용)

・ (연　령) 5세 이하 + 6세 ~ 8세 (조례 개정, 6~8세 연령대상 추가·신설)

-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확대**

・ 기존 출산휴가 10일 + 재택근무 5일 + 도지사 포상휴가 5일

- **보육휴가 신설**

・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연 5일 특별휴가 부여 (조례 개정)

※ 기존 가족돌봄휴가(미성년 자녀 둔 공무원 연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완

- **유연근무* 월 1회 의무 사용**

*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집약근무제·재택근무제

※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은 재택근무 권장

3 기대효과

○ 육아기 자녀 둔 직원의 주 4.5일 근무 간접 실현

○ 눈치 보지 않는 유연근무 등 사용으로 돌봄·가정 친화 근무환경 조성

○ 저출생 극복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도 동참 예정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총무과)

○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에는 실제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북의 공동육아 프로젝트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출생 방책**이라 볼 수 있음

○ 최근 **전남**에서도 **'자녀행복 돌봄제도'**를 도입하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6~8세 자녀 돌봄시간을 신설해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고 있음

○ **전북자치도** 또한 **보육휴가 신설, 유연근무 확대 등 복무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공직에서부터 완전 돌봄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3. 스포츠 포인트제 추진(경기도)

◇ 1천400만 경기도민의 스포츠 기본권 향상을 위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스포츠포인트 제도 마련 및 '26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예정

1 추진배경

○ 경기도민의 스포츠 기본권 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 주요내용

○ (대　　상) 경기도민 누구나(19세 이상)

○ (내　　용)

- 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 처방(걷기·자전거·등산)
- 활동 성과에 따라 1년 최대 10만원 포인트 지급
-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화폐(경기페이)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경기도 운영 쇼핑몰(마켓경기, 경기 착착착) 상품권 교환가능

※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 후 2026년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 예정

3 기대효과

○ 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 처방 ⇒ **도민 건강증진**

○ 체육활동에 대한 포인트 지급 ⇒ **스포츠 참여 유도**

○ 도 정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 분야 ⇒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건강증진과]

○ 경기도 외에도 **서울시(손목닥터 9988), 충남도(걷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건강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헬스케어사업인 '**손목닥터 9988**(시민 모두 99세까지 팔팔하게)'의 경우 앱으로 걸음(하루 8천보, 70세 이상 5천보)이나 운동을 하면서 미션

달성 시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서울페이로 전환 후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함. '21년부터 누적 참여 인원이 약 66만 7천명으로 특히, 식단분석 서비스는 많은 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 현재 **전북** 시군에서도 **'전주 모바일 건강걷기*'** 사업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사 사업 추진 사례가 있음. 이 밖에 복지부 사업으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전북 자치도만의 특색이 담긴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처럼 **지역화폐 지급 등 지역경제 순환시스템 도입** 방안을 참고할 만함

※ 전주시 따로 또 같이 "건강걷기 챌린지"
: 정해진 10일 기간동안 하루 1만보 이상씩 걷고 응모 시 추첨을 통해, 매월 400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함
* '워크온' 어플(걷기 앱) 설치 후 전주시 커뮤니티 가입 후 챌린지 참여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란?
: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약 6개월간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단,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워크온과 함께

따로 또 같이!

전주시 모바일 건강걷기

| 2024.04.17.(수) ~ 04.26.(금) |

운영대상 전주시민 (스마트폰 소지자)

신청기간 2024년 4월 10일(수) ~ 4월 17일(수)

운영기간 2024년 4월 17일(수) ~ 4월 26일(금)

운영내용 "따로 또 같이" 전주시 비대면 건강걷기 챌린지 참여 후
10일동안 10만보 걷기 달성시 400명 추첨 후 성공선물 증정
(단, 하루 최대 1만보 인정)

참여방법



워크온 앱 QR 코드 →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 전주시 4월 "따로 또 같이" 건강걷기 챌린지 참여 예약

추 첨 일 2024년 4월 30일(화)

문의전화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
☎ 281-6333 ~ 6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19~'23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면제 사업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 분석요약 >>

◇ 최근 5년간 108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97건 (89.8%) 통과
◇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163건, 106조원에 달해 제도의 유명무실화
◇ 예타조사의 엄격성 강화로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 추진 억제 필요

□ 분석배경

○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높은 통과율**과 **면제사업 과다**는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줌

○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 제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과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

○ 분석을 통해 면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정비 대책을 촉구할 필요

□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예타 통과 97개 사업에 80조원, 통과율 90% (사업수 기준)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23	2022	2021	2020	2019
대 상	108건	14	22	25	20	27
통 과	97건 (89.8%)	11 (78.6%)	21 (99.2%)	22 (97.4%)	18 (90.0%)	25 (99.1%)

○ 경제성 분석 1보다 낮아도 통과된 사업 : 43개 (B/C값 미산출 사업 제외)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23	2022	2021	2020	2019
예타통과	43건	6	14	7	8	8

※ 상당수 사업이 낮은 B/C값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분석이나 정책분석에서 높은 점수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예타 미통과 사업 :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9건에 그침

(단위 : 억원)

연도	부처	사업명	예타결과		
			총사업비	B/C	AHP*
2019년	행안부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855	0.02	0.483
2019년	과기부	KIST 연구동 환경개선사업	539	0.71	0.377
2020년	해수부	부산항 제2신항 건설	124,284	0.92	0.497
2020년	국토부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10,754	0.85	0.497
2021년	국토부	과천선 급행화 사업	2,900	0.87	0.492
2021년	국토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사업	2,444	0.89	0.486
2021년	산업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4,643	0.35	0.415
2022년	보훈처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사업	1,330	0.41	0.280
2023년	국토부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사업	532	0.81	0.456
2023년	국토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1,811	시1) 0.67 시2) 0.81	시1) 0.454 시2) 0.486
2023년	국토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	26,744	0.36	0.325

주) 노랑색 사업은 추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며, 이 중 부산항 제2신항 건설사업은 '21년에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사업'으로 사업명과 사업비를 변경하여 예타 통과,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22년에 사업비가 1.1조원으로 증액되어 통과

* AHP (Analytic Hierachy Process)

-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 대안들의 체계적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기법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종합판단 : 경제적분석 + 정책적분석 + 지역균형발전분석
- 기본적으로 AHP>0.5를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163건에 106조원 →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예타제도**

-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사업은 예타 심사대상 사업수인 108건보다 많은 163건이며, 예타를 통과한 사업수인 97건보다도 무려 66건이 많음

  * 사업비 기준 106조원으로, 같은 기간 예타 통과 사업비 80조원보다 26조원이 더 많음

- 예타 제도의 유명무실화는 국회에서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특별법을 통해 면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분도 있음

<2019~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23	2022	2021	2020	2019
대 상	163건	28	26	31	29	49
금 액	1,057,419	119,999	172,438	105,020	241,500	418,462

<2019~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사업비 상위 10개 사업>

(단위 : 억원)

연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비고
2022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137,584	법령상 추진 국가정책 추진
2020	행안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96,630	국가정책 추진
2019	국토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6,562	국가정책 추진
2019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44,411	법령상 추진
2020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43,615	국가정책 추진
2019	국토부	평택~오송 복선화	30,904	국가정책 추진
2020	국토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28,520	공공청사, 재난복구 등
2023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	25,768	법령상 추진 국가정책 추진
2020	산업부	전선지중화	20,000	국가정책 추진
2023	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9,314	국가정책 추진

※ 예타가 면제된 6개 건설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가정책적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음

<< 시사점 >> (①~③ :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④ : 국토연구원 의견)

① 예타 면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필요

⇒ 최근 5년간 예타 심사대상 사업수(108건) 대비, 예타 면제된 사업(163건)이 훨씬 많아, 예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상황

⇒ 예타 면제의 주된 사유(국가정책적 추진 또는 지역균형발전)가 모호하여 정략적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되고 있음

⇒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는 사유에 대한 법률적 정비 필요

② 예비타당성조사의 엄격성 강화→무분별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억제 필요

⇒ 예타 대상사업 중 통과가 된 사업 비율이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예타 제도의 적용이 상당히 느슨하다고 볼 수 있음

③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예타 대상 사업과 면제 사업에 대하여 조사 결과와 함께 해당 사업을 공개하여 국민 알 권리 충족 필요

④ '19년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함

2.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2년)('24.3/한국지방세연구원)

≪ 연구요약 ≫

◇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것이었으며, 2023년 이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점차 완화되어 보유세 강화 정책 시행 이전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

□ 개요

○ OECD는 매년 Revenue Statistics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OECD 국가의 세수현황 및 세부담 수준을 비교

○ OECD는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국세+지방세, 이하 동일)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총조세, GDP, 민간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여 OECD 국가간 평균값과 중간값을 비교

□ 보유세 세부담 동향

○ 2022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중간값과 평균값을 모두 크게 상회하는 수준

○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21%로 15개 국가의 평균인 0.24%보다는 낮으나 중간값 0.19%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GDP 대비, 총조세 대비 및 민간 부동산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증가의 원인은 2018년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세 과세표준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기인함

□ 향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변화 예상

○ 정부는 2023년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정책을 마련함

○ 2020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을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현실화율을 완화하여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예정임

○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담상한 등도 완화시켜 종합부동산세수가 감소함

○ 종합부동산세 정부개편안 시행으로 2023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인원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주택 종부세의 경우 납부자가 전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함

○ 재산세 역시 2022년 이후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2023년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였음

○ 2024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강화정책 이전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24.3.21./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이 선거를 41일 앞두고 결정되었음. 2015년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였지만 늑장 처리가 반복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의원정수 규정을 도입하고, 획정위가 활동 시점의 법률에 근거하여 안을 제출하며, 국회가 재획정 요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입법할 필요성 있음

□ 고질적인 획정 지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41일 앞둔 2월 29일에야 지역선거구가 확정되었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임

○ 소선거구제로 전환한 1988년 총선부터 매번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정해졌음

※ 선거일 전 49일(13대) → 98일(14대) → 75일(15대) → 65일(16대) → 37일(17대) → 47일(18대) → 44일(19대) → 42일(20대) → 39일(21대)

○ 선거구획정의 지연은 선거관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함

□ 제22대 총선 획정 과정과 문제점

○ 제22대 총선 획정 과정

2022. 10. 11. 획정위 출범
2023. 02. 06. 국회에 선거구 획정기준 확정 촉구(획정위→국회)
2023. 09. 11. 국회에 획정기준 확정 재촉구(획정위→국회)
2023. 11. 20. 국회에 획정기준 확정 재촉구(획정위→국회)
2023. 12. 01. 국회의장 획정기준 송부 및 획정안 제출 요구
2023. 12. 05. 선거구 획정안 국회 송부
2024. 02. 29. 정개특위 재획정 요구서 송부, 획정위 재획정안 제출, 국회 본회의 가결

□ 입법적 개선방향

○ 첫째, 시·도별 의원정수에 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

➡ 인구기준으로 시·도에 의석을 배분하되,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 마련 등

○ 둘째, 국회의 선거제 논의가 획정작업을 가로막지 않도록, 획정위가 활동 시점의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입법은 차기 획정과정부터 적용되도록 할 수 있음

○ 셋째, 정해진 기한 내에 국회가 재획정 요구를 하지 못하면 원안대로 획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월 19일 국회(임시회) 개회사에서 선거일 6개월 전에 획정하지 못하면, 획정위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4.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2024.3.28/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자금기부의 자유 등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정하고 있음. 법률에서 주권자 시민을 성숙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보기보다 국가가 계도할 타율적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현대 국민주권주의와 부합하지 않음. 정치적 기본권의 최대보장원칙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조화를 꾀하고, 보다 선진적인 시민의 자유와 성숙한 정치문화의 자리매김을 고민할 때임

□ 선거중립의무와 위축된 정치적 자유

○ 현행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정당가입과 후원회 가입도 금지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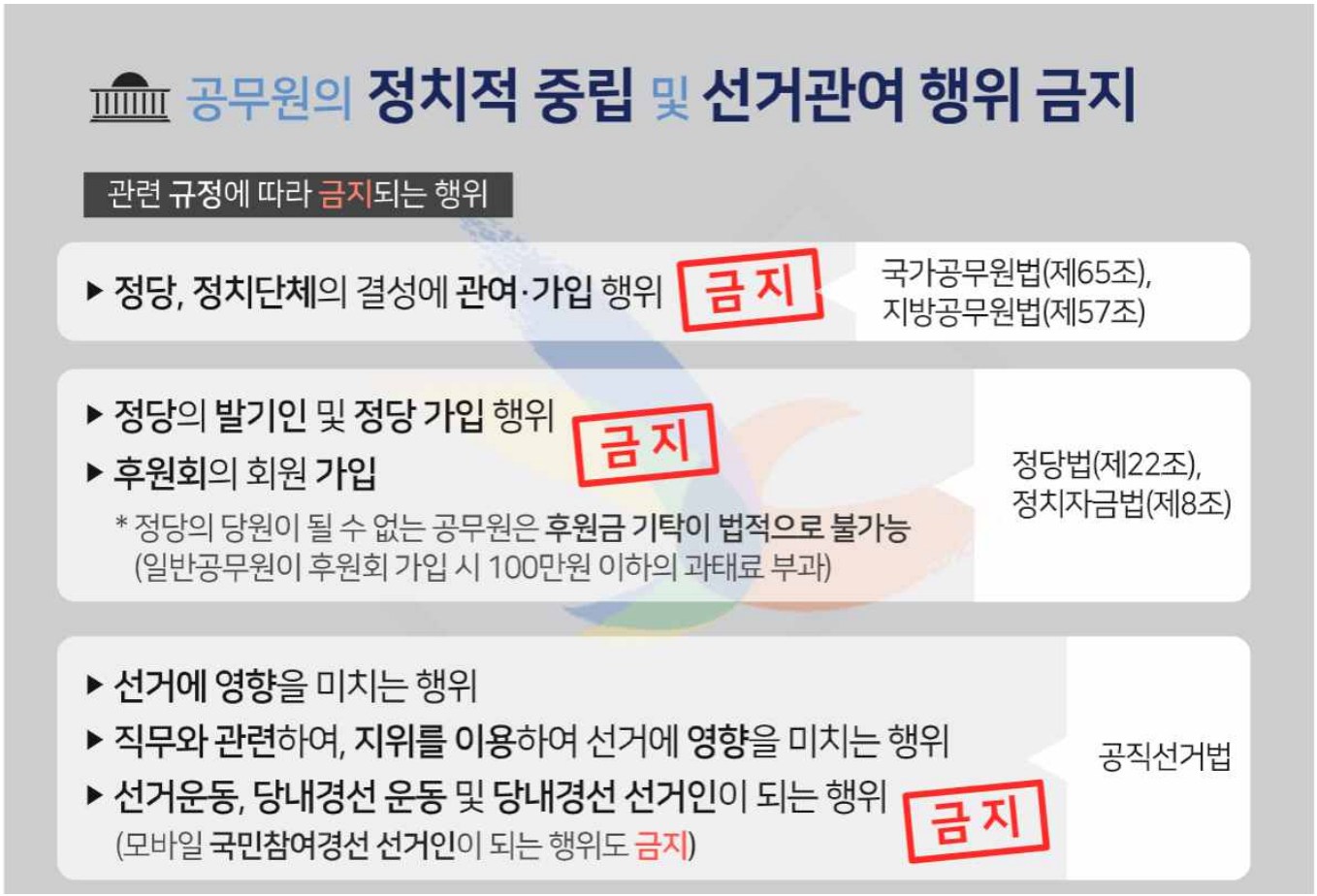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국제사회 특히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ILO 기준 적용위원회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법률내용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련의 시위운동의 기획, 참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의견표명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의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은 개인적인 표현은 물론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됨

○ 「정당법」은 정당의 당원자격에서 공무원을 배제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하고 있음

○ 「정치자금법」은 일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외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며,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입법례

○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기부 제한 입법례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지 않음
- 정치자금기부의 경우, 위에 열거된 국가 중에서 일본만 정치자금기부가 금지되고 그 외의 국가는 정치자금기부를 제한하지 않음

○ 독일 연방공무원법의 정치적 자유 최대보장

- 독일은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선거참여 규정을 두고 있음. 공무원이 유럽의회선거나 연방의회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하여는 선거일 최소 2개월 전에 본인의 원에 따라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휴가를 받아야 함.

- 낙선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당선되면 사직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하원의원을 그만두면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음
- 공무원의 당원가입금지, 후원금납부 금지, 선거운동참여금지에 관련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미국 해치법상 정치적 자유 단계적 제한

- 미국은 연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해치법을 두고, **약한 제한을 받는 공무원**과 **강한 제한을 받는 공무원**으로 구분함
- 1993년 해치법 개정에 따라, **약한 제한을 받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되었음. 다만 금지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음.
-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행정법원 판사, 국세청 범죄조사국 공무원, 재무부 검찰국 공무원 등 **강한 제한을 받는 공무원**임

【 강한 제한을 받는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일과 금지되는 일 】

○ **강한 제한을 받는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일**
- 정당과 관련없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일
- 선거권자의 등록에 도움을 주는 일
- 후보자나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 정치단체나 후보자에 대한 기부
- 정치기금 마련행사 참가, 정당구성원이 되거나 활동하며 청원에 서명하는 것,
-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 지방조례 찬반운동
-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 **강한 제한을 받는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일**
- 당파적인 정치적 활동의 적극적 업무나 선거운동을 맡는 것
-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특히 정당과 연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정당의 후보자가 되는 것
-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부소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 공무에 있어 정당배지를 착용하거나 근무 중 유니폼이나 휘장을 착용
- 선거운동관련 책자나 자료 배포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제한 방식

○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임. 기본적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일률·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함

○ 현대사회에서 정당은 모든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활동의 기본단위가 되는 사적 결사체임. 정당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률규정들은 해외입법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기본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되, 제한되고 금지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함

□ 자율적 시민과 성숙한 정치문화

○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엄정하게 살펴서, 분야별로 상황별로 성실하고도 정교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누구든지 제한 또는 금지사항과 허용사항을 법률문언만으로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보다 선진적인 시민의 자유와 성숙한 정치문화의 자리매김을 고민할 때임

5.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24.3/국회미래연구원)

≪ 연구요약 ≫

◇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7대 아젠더 제시. 22대 국회에서 풍부한 논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함

□ 혁신 성장 아젠더 요약

분류	아젠더 제목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정책과제
High Tech (디지털·첨단)	AI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계류 중인 AI법 보완 및 통과 • AI 안전연구소 설립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고도화	•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제도(K칩스법)의 한시적 운용을 넘어 기간 연장 • 국가 차원 전략적 목표와 국가전략기술별 특성과 산업생태계를 복합 고려한 조세지원제도 고도화
Green (기후·환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산업부문 전략성 제고	•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 녹색전환 성공에 주요 변수인 핵심자원 공급안정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안보 이행전략 수립 • 순환경제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Society (노동·교육·공동체)	고령사회 친화적 노동·복지 정책	• 65세 계속고용제의 법제화 등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령자 정책의 설계 • 고용보험 개편 등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 개인별 다양한 잠재력 계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안착 • 지역사회 혁신과 연계한 고등교육기관 역할 및 기능 다변화
	지역균형발전	• 마을공동체수당 신설

□ 주요내용

○ **AI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AI법 제정을 통해 AI경쟁력 강화 및 안전체계 구축기반 마련
  - 문제로 논의되는 AI 신뢰성 및 안전 등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
- **AI 안전연구소 신설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구현하고 글로벌 정책주도권을 확보**
  - 안전한 AI 개발, 표준 설정, 배포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보호
  - AI 관련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운영을 고려

○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고도화**

-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제도(「K칩스법」)의 한시적 운용을 넘어 기간 연장 논의 필요

· 안정적인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 일몰 시한을 개정하거나 상시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일몰기한을 앞둔 「K칩스법」 연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기술패권 시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운용 기간에 논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

- 국가 차원 전략적 목표와 국가전략기술별 특성 및 산업생태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조세지원제도 고도화 필요

· 전략기술별 발전 주기와 우리나라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범위와 기준 개편

(예, 기업규모 중심 접근에서 전략기술 구성요소 중심 접근으로 전환)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개방형 혁신 지원 세액공제 제도로 확장 필요

(예, 세액공제를 협력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고려 가능)

·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들을 제도화할 필요

(예, 매출과 수익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투자를 이행한 기업에 대한 세액환급 등)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산업부문 전략성 제고

-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성 제시 기반 마련

·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전력뿐 아니라 열에너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부문별 정책의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에너지 유관법 개정

· 국가 법정 중장기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권을 강화하여 에너지 정책의 정쟁화 중단 및 일관성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신뢰성 및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여 에너지효율 및 신산업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
- 제조업 기반 국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입법 추진
-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에너지 산업 선점 기반 마련

○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 녹색전환 성공에 주요 변수인 핵심자원 공급안정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안보 이행전략 수립
  - 「자원안보특별법」을 범부처 거버넌스에 기반하는 내용으로 개정
  - 주요국 기술산업 경쟁이 치열한 핵심원자재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R&D 사업 추진
  - 배터리 핵심원자재 및 소재·부품 자급도, 재생자원함유율 등의 해외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 개선 및 외교적 대응력 강화
- 순환경제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강화된 에코디자인규정에 포함된 내구성, 보수·수리·재활용 가능성, 부품 재사용 가능성 정보를 담은 에코라벨 인증 국내 기관 지원 및 산업계 역량강화 정책 추진
  - 배터리여권에서 시작하여 모든 전자기기, 섬유, 가구, 철강, 시멘트로 확장될 예정인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표준이 반영된 제품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본격화
  - 강화된 국제환경규범 및 인증 요구가 신무역장벽이 되어 국가 간 갈등이 깊어지는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회외교 역량 강화

○ **고령사회 친화적 노동·복지 정책의 실현**

- 65세 계속고용제의 법제화 등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령자 정책의 설계

· ‘60세 정년제’를 ‘65세 계속고용제’로 법 개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
· ‘60세 정년제 및 65세 계속고용제’가 노동시장에서 보다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부 지원책의 마련

- 고용보험 개편 등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 65세 이상 노동자도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제10조 2항)을 개정
· 실업 급여 중심 고용보험제를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일본형 ‘고령자계속고용급부’ 등 임금보조금 지급 등)를 전면 개편하는 등 보다 고령사회 친화적인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 개인별 다양한 잠재력 계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안착

· 고교학점제 및 AI활용 교육과 진로교육 연계 및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 창의적인 교수·학습활동 촉진을 위해 교원 연수 및 학습공동체 지원 강화
· 개별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교육평가체제로의 변화

- 지역사회 혁신과 연계한 고등교육기관 역할 및 기능 다변화

· 지식 생산, 공유, 확산, 활용, 전수 등 지역의 산업 및 사회 혁신 프로세스 관련하여 지역대학별 기능 재편 및 지원방식 다양화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 지역 대학생 및 청년 대상 경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지역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확대

· 국가-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균형발전

- 마을공동체수당 신설

· 마을공동체수당은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금.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풀을 깎는다거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일, 독거노인들의 집수리 등에 활용. 이 수당을 신설한다면, 전국에 4만 8천 개의 읍면별 단위의 마을에 해마다 3백만 원을 지급, 총 1,440억 원 소요. 이는 정부가 해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해볼 만함

· 수당 신설의 시행착오를 고려한다면 첫해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읍면을 선정해 실시하고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전국으로 확대, 10년을 지속한다면 48만 개의 신사업을 실험. 예를 들어 마을 승강장 환경을 정비하거나 마을영화관 운영, 독거노인 반찬 배달, 여성 귀농인 안심 거주 지원, 마을 문화유산의 조사 및 자료 제작, 마을풍물단 복원, 유휴농지 활용 공동 작업, 이웃 마을 연계 공동 활동 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임

6.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24.3./국회미래연구원)

《 연구요약 》

◇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도심 하늘을 나는 기체

○ UAM은 기체 개발(기체 및 부품 제작) 및 서비스(운송, 유지보수)와 함께 인프라(건축, 건설),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

○ 미국이나 EU 등은 우리보다 앞서 UAM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R&D 지원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

□ 도심항공교통 도입의 기반 조성

○ **정부의 추진 정책**

- 우리나라 정부는 "K-UAM 로드맵"에서 2025년 상용화 개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K-UAM 기술로드맵"을 통해 시기별 UAM 시장 변화 형태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시기별 UAM 시장 변화 형태

구분		초기 (2025~)	성장기 (2030~)	성숙기 (2035~)
기체	속도	150km/h	240km/h	300km/h
	거리	100km	200km	300km
	조종 형태	조종사 탑승	원격조종	자율비행
항행/교통	교통관리 체계	유인교통관리	자동화 +유인교통관리	완전 자동화 교통관리
	비행 회랑	고정식	혼합식	혼합식
버티포트	노선/버티포트	2개/4개소	22개/24개소	203개/52개소
	이착륙장/계류장	4개/16개	24개/120개	104개/624개
기타	기체 가격	15억 원	12.5억 원	7.5억 원
	운임 (1인 km당)	3,000원	2,000원	1,300원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UAM '25년에 상용화, '35년에는 대구까지 간다", 2021.

○ 도심항공교통법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실증사업구역,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UAM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향후 과제

○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안전, 고비용, 소음과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
  - (안전) 기상상황, 기체의 부품 고장,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비용) 상용화 초기 요금 높을 것임. 2035년 전까지 고급교통수단으로 일반대중이 이용하기 어려움
  - (소음)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버티포트 주변의 주민에게 피해
  - (사생활) 저고도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 활용방안 :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는 응급 수송, 의료, 수색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또는 기존 지상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교통복지 측면에서 UAM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공공에서 사회적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도시 교통시스템으로서의 UAM 편입**

- UAM이 도심에서 다른 교통수단 및 인프라와 조화롭게 통합되어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버티포트를 도시 및 교통 인프라 계획에 통합하여 고려하도록 버티포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버티포트의 입지를 세밀하게 설계하여야 함. 버스나 철도, 택시, 개인형 이동수단, 카셰어링 등 도심 내 지상 교통수단 및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R&D 활성화 및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 미국의 Joby Aviation, 독일의 Volocopter, 중국의 Ehang 등의 해외 기업들로 시험서비스 단계까지 도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국산 기체는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K-GC에서도 다수 컨소시엄이 해외 제작사의 기체를 활용할 예정
- (국가) 기체 및 부품, 추진 기술, 에너지, 고속 충전, 통신·네트워크, 자율 비행, 교통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자체) 시범운영구역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

7.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요약 》

◇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생산이 강조되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 연구배경

○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배터리**의 빠른 **보급**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이를 위해 ①**생산비용 절감**, ②**탄소배출 저감**, ③**천연자원 채굴 최소화**, ④**산업 현장의 인권·안전 보장** 필요
- 배터리 전주기(생산-사용-폐기)에 순환경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①~③의 환경·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에 기여, ④문제해결에는 간접적인 기여 가능

* 순환경제 전략: 재활용(물질 회수), 재사용, 전기차 공유, 수리/재정비, 중고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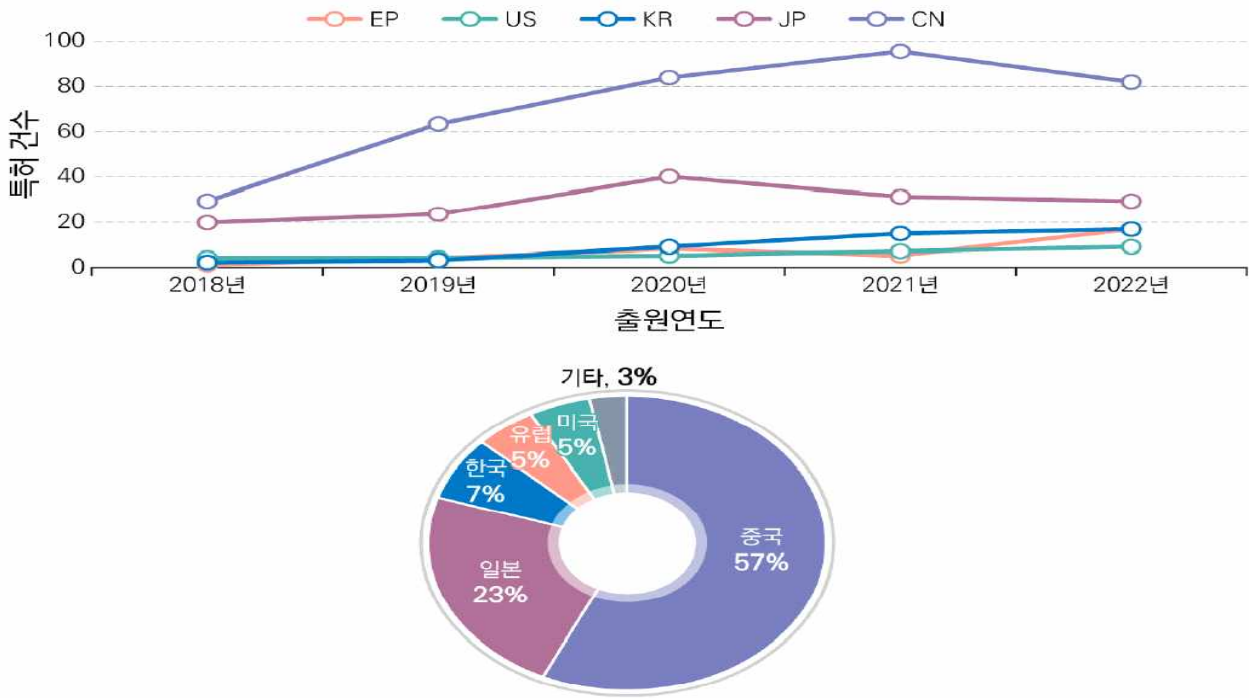
○ 순환경제 적용 기대효과: **경제적 가치 $35백만**, **전기차 충전인프라 비용 90% 저감**, **온실가스 34Mt 감축**, **천연자원 채굴량 저감**, **핵심원자재 가격변동성 대응력 강화** 등

□ 주요내용

○ 지금까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은 물질 재활용, 특히 양극재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부문

- **중국과 일본**이 **특허 규모**면에서, **미국과 유럽**이 **기술 내용** 면에서 영향력이 높음

<주요 5개국 배터리 순환경제 특허 규모 변화>



- 전고체 배터리등 차세대 배터리가 널리 상용화되는 **미래**에 해당 **배터리 재료**를 **분리·회수**하는 기술이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음극재, 분리막, 배터리 셀 외부 물질 재활용 기술**을 통해 **회수 가능**한 **물질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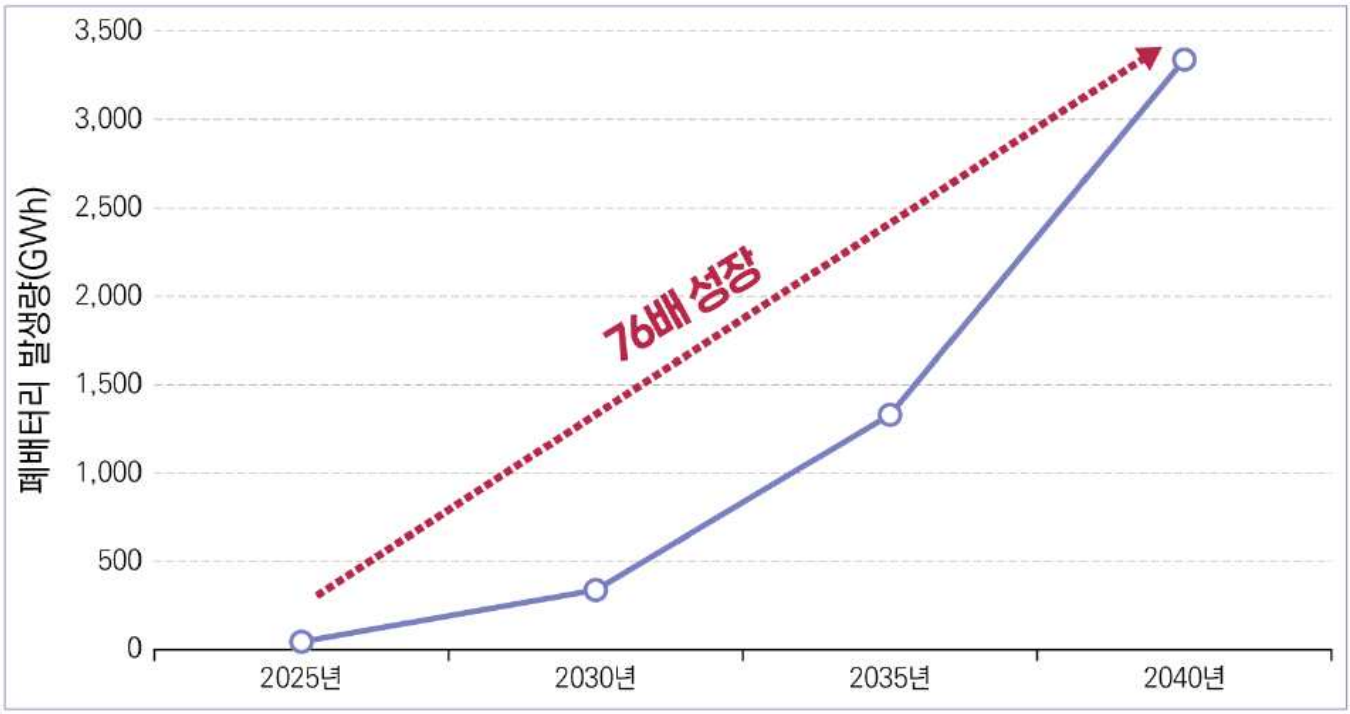
<배터리 순환경제 단계별 기술요소>

구분	수거 및 검사	재사용(재제조)	기계적 전처리	재활용(물질회수)
공정	• 지정업체 수거 • 배터리팩 세척/외관검사 • 잔존용량/안전성 검사 • 분류, 분해 • 성능검사, 등급 분류	• 수리, 정비 • 재조립	• 배터리 방전 • 사용후 배터리 분해, 파쇄 • 자력선별	• 건식공정 • 습식공정
공정 결과물	• 셀, 팩, 모듈 단위 사용후 배터리	• 에너지저장장치, 전력 보조장치 등	• 배터리 파우더	•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글로벌 주요기업	• Umicore(벨기에) • Brunp(중국)	• Eaton Energy(영국) • ABB(스위스) • Vattenfall(스웨덴) • Bosch(독일)	• Umicore(벨기에) • Brunp(중국) • GEM(중국)	• Umicore(벨기에) • Brunp(중국) • GEM(중국)
국내기업	• 인선모터스 • 한국전지재활용협회	• 피엠그로우	• 성일하이텍 • 지엠텍	• 성일하이텍 • 지엠텍 • SK이노베이션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재사용·재제조 공정**에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2025~2040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데이터 출처: SNE리서치 (2023)

○ 배터리여권 도입은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생산되는 배터리 원료·부품·소비재 생산활동을 저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저가 원자재 공급 중심의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이 반영된 후방산업으로 점진적 개편 전망, **배터리 주요 소재 점유율**이 **낮은 한국**에게 **틈새**를 **제공,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사점 》

1 **배터리 생산 경쟁력은 상당 부분 가격경쟁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사용이 경제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공정효율 극대화와 품질인증 등의 요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특허기반 국내 기술 영향력 분석결과 양적 성장은 존재하되 글로벌 시장확장 잠재력 및 영향력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로 드러나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술영역에 집중 투자 필요

3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폐자원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준수 여건 조성 및 전주기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

4 배터리 회수, 해외 제도변화 대응, 인증·허가 등 제도가 미비한 영역을 보완하고 수거부터 재제조까지 순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업체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8.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24.3/통계청)

≪ 결과 개요 ≫

◇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본 내용은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임

□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천억원(4.5%) 증가

○ 학교급별 초등학교 12조 4천억원, 중학교 7조 2천억원, 고등학교 7조 5천억원, 전년대비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 증가

* 학생수 변화: ('22) 528만명 → ('23) 521만명(7만명, 1.3% 감소)



□ 사교육 참여율은 78.5%(0.2%p 증가), 주당 참여시간은 7.3시간(0.1시간 증가)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 전년대비 초등학교 0.8%p, 고등학교 0.5%p 증가, 중학교 0.8%p 감소

○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 전년대비 초등학교 0.1시간, 고등학교 0.1시간 증가, 중학교 0.1시간 감소

□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원이고, 참여학생은 55만3천원 전년대비 각각 5.8%, 5.5% 증가

○ (전체학생) 초등학교 39만 8천원(2.5만원, 6.8%↑), 중학교 44만 9천원(1.2만원, 2.6%↑), 고등학교 49만 1천원(3.2만원, 6.9%↑)임

* 일반교과 32만 6천원(1.6만원, 5.3%↑), 예체능 및 취미·교양 10만 5천원(0.7만원, 7.1%↑)

○ (참여학생) 초등학교 46만 2천원(2.5만원, 5.7%↑), 중학교 59만 6천원(2.1만원, 3.7%↑), 고등학교 74만원(4.3만원, 6.1%↑)임

* 일반교과 51만 8천원(2.8만원, 5.7%↑), 예체능 및 취미·교양 22만 6천원(1.0만원, 4.7%↑)



□ 일반교과 과목의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6천원이고, 참여학생은 5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3%, 5.7% 증가

○ (전체학생) 영어(12.8만원), 수학(12.2만원), 국어(3.8만원), 사회·과학(1.9만원) 순- 전년대비 국어(11.1%), 사회·과학(8.2%), 수학(5.6%), 영어(3.8%) 증가

○ (참여학생) 영어(24.8만원), 수학(23.3만원), 국어(14.8만원), 사회·과학(13.7만원) 순- 전년대비 국어(8.2%), 사회·과학(7.4%), 수학(5.9%), 영어(5.0%) 증가

□ 가구의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천원이고,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만 3천원- 전년대비 각각 3.5%, 3.0% 증가

□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2%증가 -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 9천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 8천원

□ 월평균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전년대비 2.9%p 증가

○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 구간별 학생 비중이 전년대비 60만원미만 구간에서는 모두 줄었으나, 60만원 이상 구간은 증가함

□ 사교육 수강목적은 일반교과는 학교수업 보충, 예체능은 취미·교양·재능계발 비중이 가장 높음

○ 일반교과는 학교수업 보충(49.6%), 선행학습(24.0%), 진학준비(14.2%)에서 비중이 높으며, 전년대비 보육(0.7%p) 증가, 학교수업 보충, 불안심리 등 감소

○ 예체능은 취미·교양·재능계발(63.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보육(0.9%p) 증가, 취미·교양·재능계발, 학교수업 보충 등 감소

□ 방과후학교 참여율 41.0%, EBS교재 구입비율 16.1%, 어학연수 참여율 0.5%

○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년대비 4.8%p 증가, EBS교재 구입비율은 0.3%p 감소, 어학연수 참여율은 0.3%p 증가

9. 인구감소 시대, 미래학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23.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요약 및 평가 ≫

◇ 미래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방향성을 제안

1 인구감소 시대, 미래 초·중·고 학령인구 및 학교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급격한 학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초·중·고 미래 학교교육 의제 설정 필요

○ 실증적 데이터 기반 지역별 인구 변화 특성을 고려한 미래 학교교육 방향 탐색 필요

2 2040년, 초·중·고 학령인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 2020년 547만(초 272만, 중 136만, 고 139만), 2070년 228만(초 110만, 중 56만, 고 62만), **전체 인구 대비 초·중·고 학령인구의 비중**은 **'20년 10.5%, '70년 6.0%**로 예상
- 초·중·고 학령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앞으로 계속, **세종을 제외한 학령인구는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
-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2020~2040년 사이의 변화 추이**를 보면 7개의 시군구(경기 화성시, 세종시, 경기 하남시, 부산 강서구, 경기 김포시, 경북 예천군, 충북 진천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 특히 **수도권과 울산, 부산, 경남의 시군구 지역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

○ **학생 수의 변화**

- 학교급별, 지역별 **2020년 대비 2040년 초·중·고 학생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고등학교의 감소 폭이 가장 크고(49.4%), 중(42.4%), 초(32.5%) 순으로 감소

○ **학교 규모별 학교 수 변화**

- **2020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300명 초과의 대규모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50%를 상회**. 초등학교(53.5%), 중학교(59.7%), 고등학교(77.5%)
- **2040년**이 되면 모든 학교급에서 대규모 학교의 비율이 가장 많이 줄고 **중·소규모 학교 비율의 증가가 뚜렷**. 초등학교 대규모(38.6%), 중학교 대규모(29.4%), 고등학교 대규모(40.0%) 차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020년 대비 **2040년**에 **초등학교의 규모별 분포 지도와 지역 규모별 학교 규모 비중**을 살펴보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크게 증가**, 면 단위 지역은 이러한 현상이 이미 2020년부터 6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학교 고립도 변화**

- 2020년에는 대규모 비고립학교가 대부분이었으나, **2040년**이 되면 **중·고의 경우 중규모 비고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소규모 고립, 과소규모 고립학교의 비중도 크게 증가

3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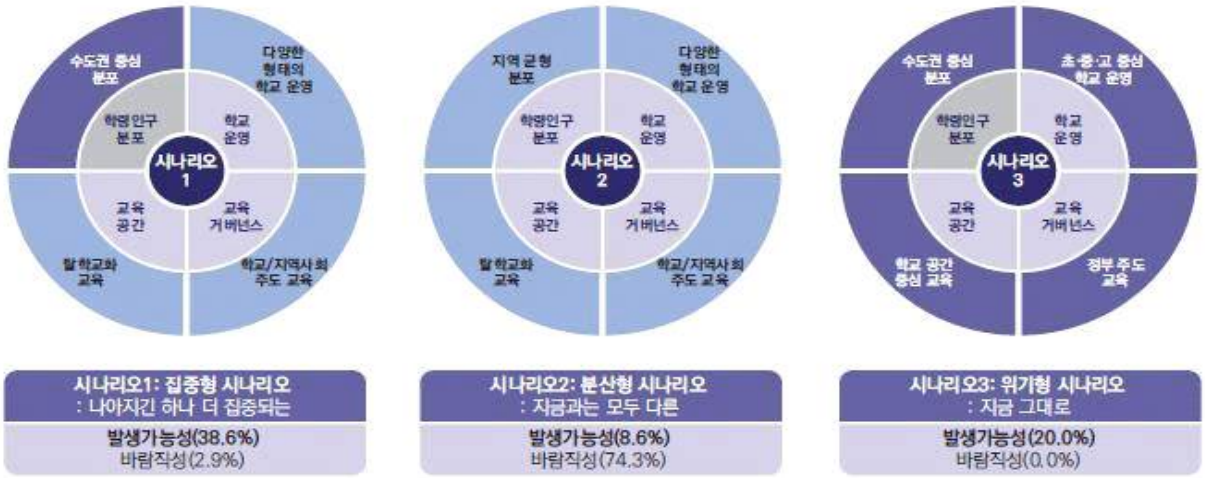
○ 델파이 조사에 기반한 미래학교 시나리오 도출

- 2040년 인구감소 대비 **교육의 미래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주요 변인**으로 **학령인구 분포, 학교 운영, 교육 공간, 교육 거버넌스**를 **설정**, 각 변인에 대한 2개 범주를 설정하고 델파이 조사를 실시

○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 세 가지**

- 2040년 인구감소 대비 미래 교육의 발생가능성과 선호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도출한 결과 38.6%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20.0%로 발생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시나리오, 74.3%의 높은 선호도가 나타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유의미한 시나리오로 채택되었음

-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발생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시나리오와 일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 학교 시나리오'로 총 세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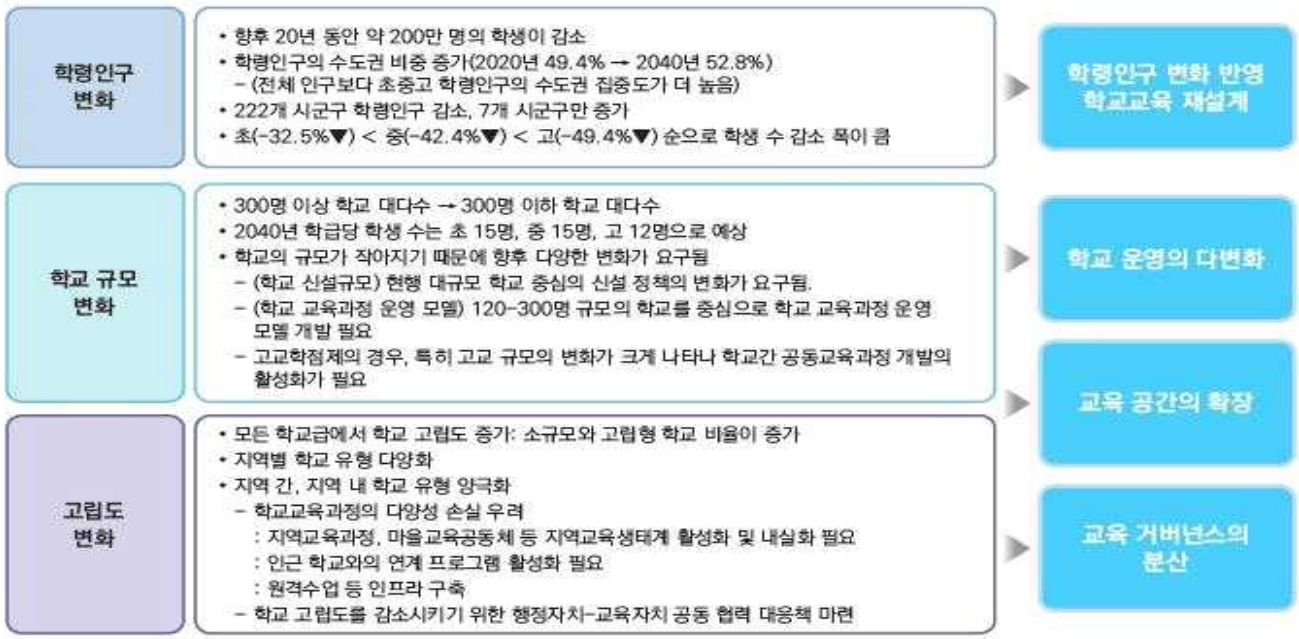


[그림 9]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

4 바람직한 미래 학교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 **2040년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학령인구 추계기반 학생 수 및 학교 규모 예측에 따른 **국가 수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학교·학급·교원·재정 등의 적정화 개념 재정의, **도시형 대규모 학교 중심의 학교 신설 기준**이나 **학교 운영 모델 재검토** 필요
- **소규모, 고립형 학교 수 증가, 지역별 학교 유형 다양화 및 양극화 심화**: 중앙집권형 대응 시나리오 적용보다 **지역 및 학교 자치형 대응 전략,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필요
-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의 지역 및 학교 특성 분석 및 예측, 인구추계 분석 기반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지속적 조정에 따른 **정밀한 학교교육 정책 설계 필요**
- 공공재이자 공동재로서의 **교육자원의 효율성과 공공성 고려**: **교육 환경 취약 지역의 학교 폐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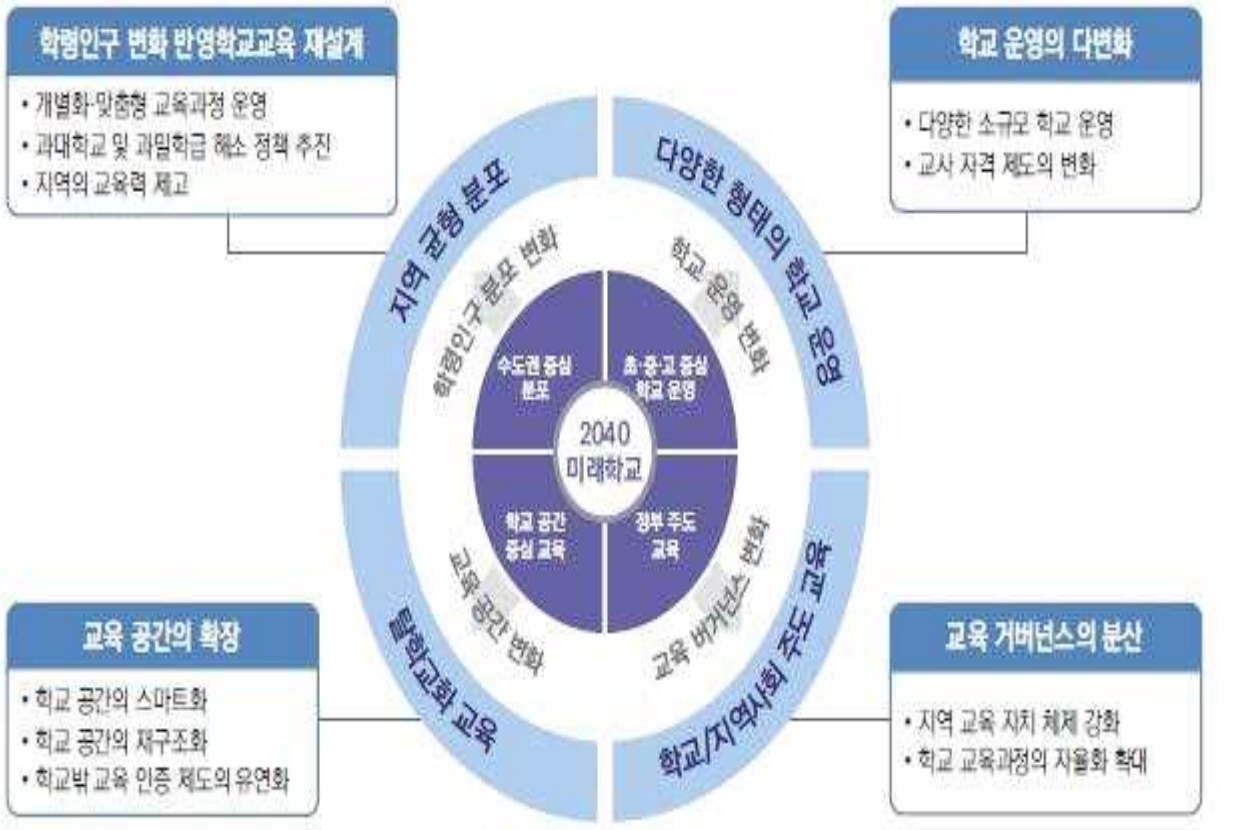


[그림 10] 2040년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제시**

-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지금의 학교교육과는 모두 다른 상황, 즉 **학령인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고,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학년과 학교급으로 구성된 형태**로 학교가 운영되며, **교육 공간은 탈학교화**를 통해 여러 공간(온/오프)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을 주도하는 미래**로, 전문가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40년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2040년경 학령인구 분포, 학교 운영, 교육 공간,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출했던 인구감소 대비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은 아래와 같음

-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을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교육 재설계**, 다양한 지역 특성과 학교 유형을 고려한 **학교 운영의 다변화**, 어디에서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하고 미래 지향적 배움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의 확장**, 그리고 지역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분산** 측면에서 제시



[그림 11]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 기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으로 제시한 영역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제안

〈표 7〉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과 개선 및 지원 방안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개선 및 지원 방안	단기	중장기
학령인구 변화 반영 학교교육 재설계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 및 유연화		○
		탄력적인 학제 및 학교 운영		○
		민간-공공 협업시스템 구축		○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정책 추진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	
		광역학구제 및 공동학구제 등을 통한 학생 분산 정책 추진	○	
	지역의 교육력 제고	지역별, 학교별 적절한 예산 배분	○	
		지역 기반 성장 모델 구축		○
		적극적인 학교 재구조화		○
		교육 패러다임 전환		○
학교 운영의 다변화	다양한 소규모 학교 운영	통합운영학교를 하나의 학교 유형으로 규정	○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		○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의 변화		○
	교사 자격 제도의 변화	초·중등 교사 복수 자격 취득 방안 마련		○
		교사의 다교과 자격 취득 체제로 전환		○
교육 공간의 확장	학교 공간의 스마트화	디지털·AI 교육 환경 구축	○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	
		교사의 온라인 수업 전문성 제고	○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학교 시설 복합화 및 지역 생활 공간화		○
	학교 밖 교육 인증제도 유연화	교육 공급자 다원화		○
교육 거버넌스의 분산	지역 교육 자치 체제 강화	교육지원청의 역할 구체화 및 자치 권한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연대	○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	
		지역 및 학교 규모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교 내·외부적 지원	○	
		학교 자치와 관련된 법률 제정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주택구입 · 전세자금(융자) 사업의 지원기준 관련 검토 필요 사항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소득·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전·월세입주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조 9,844억 7,300만원 증액된 12조 3,64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주택구입 · 전세자금(융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B-A	(B-A)/A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8,521,691	10,380,027	11,316,427	12,364,500	1,984,473	19.1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는 디딤돌대출, 전세보증금을 융자하는 버팀목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인상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주택(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대출한도(주택구입 5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는 기존 대출상품보다 완화된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된다.

[주택구입 · 전세자금 대출 개요]

(단위: 억원, %)

구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	
	기존	특례	기존	특례
소득	8.5천만원	1.3억원 이하	7.5천만원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2.15~3.55	(8.5천만원 이하) 1.6~2.7 (1.3억원 이하) 2.7~3.3	1.5~2.9	(7.5천만원 이하) 1.1~2.3 (1.3억원 이하) 2.3~3.0
주택요건	무주택자			

주: 특례대출의 소득별 금리는 자녀 1인 기준이며, 1자녀 추가 출산 시 0.2%p 우대금리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나. 분석의견

○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지원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유주택자 부부 역시 신생아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및 출산율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의 경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소요 34.9조원 중 26.6조원이 신생아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월세자금 대출소요 22조원 중 7.6조원이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가구 임차보증금대출 등에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 8조 7,670억원,

전월세자금 3조 5,975억원을 직접 융자하는 한편, 그 외의 대출소요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통해 대응하되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융자와 동일한 수준의 금리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도 주택구입 · 전세자금(융자)사업 계획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계획안	계획안 산출근거
주택구입자금	8,767,000	○ 최근 5개년 평균 대출실적 및 신생아특례 33.8조원, 신혼희망타운 1.2조 등 반영하여 총 35.0조원의 구입자금 소요 예상
전월세자금	3,597,500	○ 최근 3개년 전·월세자금 대출실적 추이,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 증가, 비정상거처 대출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22.0조원의 전·월세자금 소요 예상 - 전·월세자금 공급액 22.0조원 중 신생아 특례, 전세사기 피해가구 등 임차보증금 대출 18.4조원은 은행재원을 활용하고 기금 예산은 3.6조원 편성

자료: 국토교통부

○ 신생아특례대출을 기존대출상품과 비교할 경우 소득요건이 상향되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소득요건 상향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실제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연소득을 부부의 근로·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세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득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소득은 부부의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기준 5.06억원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가구의 평균값 이하로 설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분위 1,323만원, 2분위 3,080만원, 3분위 5,036만원, 4분위 7,649만원, 5분위 1억 4,973만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연소득 상한선 1.3억원은 4분위 가구의 평균값 보다는 5분위 가구의 평균값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된다.

○ 이때 국토교통부는 혼인 여부가 아닌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후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혼인이 아닌 출산 여부를 요건으로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의 출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런데 이들의 경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혼인신고한 부부 중 약 25%는 실제 혼인연도와 혼인신고연도의 시차가 1년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혼인신고한 부부의 실제 혼인연도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실제 혼인연도				
		2022	2021	2020	2019	~ 2018
혼인신고	191,690	142,922	28,991	8,377	3,756	7,644
비율	100	74.6	15.1	4.4	1.9	4.0

주: 마이크로데이터상 실제 혼인연도가 2022년 이후로 기재된 경우는 2022년으로 포함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 통계청의 「법적혼인상태별 출생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대부분의 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이나 혼인외 출생자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2%에서 3.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2022년 연도별 출생아 중 혼인외 출생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출생아 총계	혼인외 출생아	출생아 총계	혼인외 출생아	출생아 총계	혼인외 출생아
인원	326,822	7,166	302,676	6,974	272,337	6,876
비율	100	2.2	100	2.3	100	2.5

구분	2021		2022	
	출생아 총계	혼인외 출생아	출생아 총계	혼인외 출생아
인원	260,562	7,682	249,186	9,763
비율	100	2.9	100	3.9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혼인 여부가 아닌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 시행에 있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저조한 신규 가입률을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0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489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년내일채움공제	841,878	429,586	148,988	△280,598	△65.3

자료: 고용노동부

○ 동 사업에서는 2023년 기준 청년 부담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지원 400만원을 포함하여 2년간 총 1,200만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사업 내용]

사업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 (재원)	2017~2025('23년 사업 3년 한시)(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개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지원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
지원기간	2년
근로조건	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지원수준	1,200만원= 청년 400+기업 400(자부담 100%)+정부 400
지원목표	20,000명 지원(신규)
목표달성	('23.8월말) 2,753명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3년부터 사업 참여 업종을 제한하고, 기업의 자부담율을 높이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신규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종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 기업이 적립금을 전액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의 자부담이 100%로 바뀌는 등 사업내용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변경 내역]

사업연도	사업장 참여요건	지원수준	적립비율	기업부담율
2020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	2년형 청년 300 + 기업 400+ 정부 900 3년형 청년 600 + 기업 600+ 정부 1800	없음
2021 (~8월)	상동	2년형: 1,200만원 (3년형 폐지)	청년 300 + 기업 300+ 정부 600	없음
2021 추경 (9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외)	상동	상동	50인 미만 면제 50인 이상 20% 부담
2022	상동	상동	상동	30인 미만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2023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	상동	청년 400 + 기업 400+ 정부 400	자부담 100%

자료: 고용노동부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제조업·건설업은 청년의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 도입업종으로 지정되고 있는 만큼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자산형성 관련 타부처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 이후, 동 사업의 신규 가입 청년 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2,753명, 가입기업 수는 2,142개로 올해 신규가입 목표치인 20,000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목표 대비 13.7%). 이는 사업장 요건에서 업종이 제한(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등)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업에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동 사업을 위하여 1,489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2023년 신규가입자가 7,000명(목표 대비 3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규가입자를 위한 24년도 지급시기 도래분 44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도 예산안 산출식]

(산출) 145,879백만원
- ▲ '23년도 가입자 지급시기 도래분 : 4,409백만원
  - (1회차, 1개월)=(0.7만명×30만원×4/12월×1)
  - (2회차, 6개월)=(0.7만명×35만원×9/12월×0.90)
  - (3회차, 12개월)=(0.7만명×35만원×9/12월×0.79)
  - (4회차, 18개월)=(0.7만명×50만원×3/12월×0.69)
- ▲ '22년도 가입자 지급시기 도래분 : 115,080백만원
  - (3회차, 12개월)=(7만명×120만원×3/12월×0.79)
  - (4회차, 18개월)=(7만명×140만원×9/12월×0.69)
  - (5회차, 24개월)=(7만명×140만원×9/12월×0.65)
- ▲ '21 가입자(추경) 지급시기 도래분 : 3,640백만원
  - (5회차, 24개월)=(2만명×140만원×2.4/12월×0.65)
- ▲ '21 가입자(본예산) 지급시기 도래분 : 22,750백만원
  - (5회차, 24개월)=(10만명×140만원×3/12월×0.65)

자료: 고용노동부

○ 따라서 연말까지 현재와 같은 저조한 신규 가입율이 유지되어 7,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달성하게 못하게 될 경우, 2024년도 예산안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동 사업의 올해 월별 신규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3~4월에 집중적으로 신규 가입이 이루어지고 이후로는 신규 가입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반기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월별 신규 가입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신규 가입자수	3	-	701	739	411	371	268	**260**
누계	3	3	704	1,443	1,854	2,225	2,493	**2,753**
기업수 (누계)	3	3	594	1,143	1,461	1,746	1,965	**2,142**

자료: 고용노동부

○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사업 참여 업종을 제한하고, 기업의 자부담율을 높이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신규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12억 6,799만원 증액된 4조 6,87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673,685	4,566,436	4,687,703	121,267	2.7
국가장학금 지원	4,104,919	4,030,777	4,097,498	66,721	1.7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416,255	376,445	436,375	59,930	15.9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1,153	57,856	57,626	△230	△0.4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99,338	99,338	94,184	△5,154	△5.2
운영비(인건비)	2,020	2,020	2,020	0	0

자료: 교육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중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이 2023년 67억원에서 2024년 156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멘토 지원인원을 4,000명에서 8,000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멘토 장학금을 13,000원에서 15,000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나. 분석의견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의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면 지원대상자를 2배로 확대한 2024년 예산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은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습·언어교육 지원, 학교생활 적응 등을 위해 국내 대학·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으로, 대학생에게 활동시간당 12,500원(도시)~15,000원(농촌)을 지원한다.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 집행률은 2020년 63.1%, 2021년 90.0%, 2022년 90.3%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멘토 신청인원이 2020~2022년 2,595~3,129명으로 2024년 계획인원 8,000명에 많이 미달하는 수준이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 예산(A)	집행액(B)	집행률
2020	6,750	4,260	63.1
2021	6,750	6,078	90.0
2022	6,750	6,092	90.3
2023	6,750	32.2	47.6
2024	16,700	-	-

주: 2023년은 8월말 기준 집행액 및 집행률
자료: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선발 실적]

(단위: 명)

구분	멘토 신청 인원	멘토 선발 인원	경쟁률
2020	2,869	1,971	1.45:1
2021	3,129	2,430	1.29:1
2022	2,595	2,041	1.27:1

자료: 교육부

○ 멘토 신청 인원이 적은 것은 대부분의 멘티가 농· 어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다른 멘토링에 비해 멘토 매칭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의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면 지원대상자를 2배로 확대한 2024년 예산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참고자료

1. [서평]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송영길 지음, 교보문고)

시대의 흐름, 대가족 > 핵가족 > 핵개인
이제 '핵개인'의 세상이 온다!

산업혁명은 산업의 구조를 전환시켰지만 사회 구조에도 많은 전환을 가지고 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가족의 형태**이다. 필자의 저서인 "4차 산업혁명 인사이트 22(김태완 저)"에서 각 산업혁명을 사람의 관점에서 1차 산업혁명은 "이동", 2차 산업혁명은 "육성", 3차 산업혁명은 "공급", 4차 산업혁명은 "대체"로 정의한 바 있다. "이동"으로 정의한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고 있던 당시 대부분의 가족은 3대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 시대였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이동은 대가족을 분해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부터 2대 가족 즉 핵가족의 시대가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핵가족"이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핵가족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족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대는 핵가족마저 쪼개지는 시대가 왔다. "1인 가구"의 등장이다. 1인 가구의 등장은 개인의 관점으로 볼 때 단순한 가족의 의미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로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송길영 작가의 "핵개인의 시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대에 개인을 바라보아야 할 관점과 나도 모르게 핵개인으로 진화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통찰적 관점으로 시사점을 주고 있는 책이다.

◆ **핵개인이란?**

지금까지 시대는 권위를 통해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권위가 쪼개지고 융합되고 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청년기에 조직에 들어와 조직에 헌신하고 연륜과 경험을 통해 권위를 얻는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를 하는 가장 평범한 생애주기가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100세 이상의 생애주기에서는 조직 내 권위보다는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역량과 생존을 고민하는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효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연결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가족, AI와 결합된 인간의 삶 속에서 기존의 존재하던 개인과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개인의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 **"핵개인"**이라 정의한다.

◆ 핵개인의 세계관

세계관은 개인이 접하고 있는 생각과 활동의 범주에 의해 정해진다. 디지털 기술은 개인의 생각과 활동 범주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확대시켰다. 핵개인의 세계관은 물리적 경계에 국한받지 않는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등 기존의 고정관념적 사고의 경계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특히 메타버스는 개인의 세계관을 상상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막연하게 개인이 소속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에 부합되거나 소속된 조직에 대한 우러러 나오는 자부심이 있을 때 그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충성한다.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관계성은 가족 관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 핵개인의 무장

핵개인은 자동화와 지능화로 개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역량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판단하는 시대에서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판단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쏟아지는 정보와 신기술을 개인이 모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개개인의 네트워크가 개인의 역량으로 인정받는 시대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핵개인의 역량은 "AI 디렉터"로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지능화와 자동화로 무장된 핵개인들은 진부한 이전의 노동과는 차별화된 영역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일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일" 그 자체**, 직장이 아닌 **직업에 초점을 맞추는 직업관**을 갖추게 될 것이다.

◆ **핵개인의 태세**

핵개인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현시대는 과거에는 조직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온전히 스스로 해결함으로 자체 역량 강화가 가능한 시대이다. 기업의 경우 그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육성하여 업무에 투입시켰다면, 앞으로의 기업은 처음부터 "완성된 숙련자"를 모시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는 직원 채용의 개념에서 인재 영입의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리더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과거와 같이 부하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시, 관리 및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동료의 관점에서 명확한 업무지시와 역할 분배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주목해야 한다. 핵개인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어 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투명하게 공유되는 실질적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핵개인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인사의 역할은 인재육성, 인재개발의 차원이 아니라 지원과 격려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핵개인의 자립**

핵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自立)이다. 이는 핵개인은 스스로 업의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의 결속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효도는 부모가 자식을 키워준 부분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자식들이 노년의 부모를 부양함이 효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출생률 급감은 젊은 세대들에게 효도가 부담과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 100세 시대에는 20~30년의 양육이 50년의 돌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개인이 자립성을 갖추어야 할 이유이다. 그러나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의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지원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효도의 종말이 인륜의 저버림이 아니라 준비된 사회 안전핀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돌봄의 끝은 자립이고 자립의 끝은 내가 나이 삶을 잘 사는 것이다."**

Ⅴ. 기타 참고자료

◆ 핵개인의 출현

다양성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특히 세계화는 종족 간의 다양성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핵개인은 다양성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인다. 핵개인의 시대에는 가(家)는 있지만 족(族)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가족을 경제 공동체의 최소 단위로 규정했으나 이제는 경제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사람 개개인이 되고 있기때문에 더 이상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선배라는 말조차 사라질 수 있다. '앞서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우리 모두를 동등한 신인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탁월한 핵개인은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선배의 자리, 권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닌 '신인의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이다. 핵개인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능동적 결정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시대의 개인들은 자기 삶과 사회 모두에 책임을 다하는 핵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 김태완 경영전략 컨설턴트 서평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억압적인 기제로
유지되던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이제 개인이 상호 네트워크의 힘으로 자립하는
*새로운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
효도의 종말과 협력 가족의 진화,
AI 최적화 시스템 속에서
*기존에 없던 존재인 **새로운 개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견합니다.

- 작가「프롤로그」중에서



2. [기타]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3.12.)

◆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전북자치도 또한 1인가구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24년에는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가정용 CCTV보급 등)> 사업 등을 시행하며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전북자치도 내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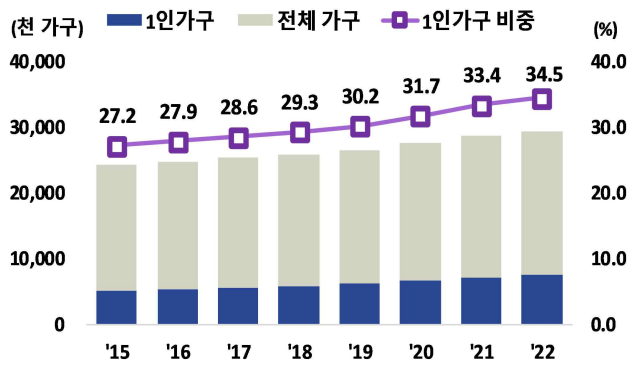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내 가구수	739천가구	743천가구	750천가구	768천가구	785천가구	**792천가구**
1인 가구수 (비율)	228천가구 (30.8%)	233천가구 (31.4%)	239천가구 (31.9%)	255천가구 (33.2%)	276천가구 (35.1%)	**285천가구 (35.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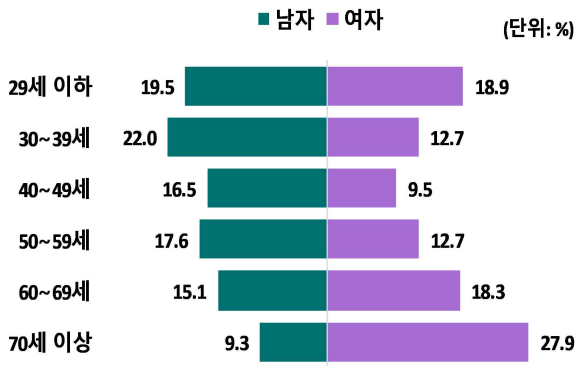
cf.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전북연구원 2021-20)」에 따르면 1인가구 20~30대, 40~50대 순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감소하고 2인 이하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1인가구의 경우 2000년 17.4%에서 2020년 33.8%로 증가)

◆ 통계청에서는 인구·가구, 주거, 고용, 소득·소비, 건강, 복지 등 주요 영역별로 1인가구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며 '20년부터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노인 1인 인구에 치우친 정책에서 청년, 중장년 등 도내 1인가구 특징을 분석하여 다양한 세대별 1인가구 지원 정책을 꾀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비중 >



<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2022)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2022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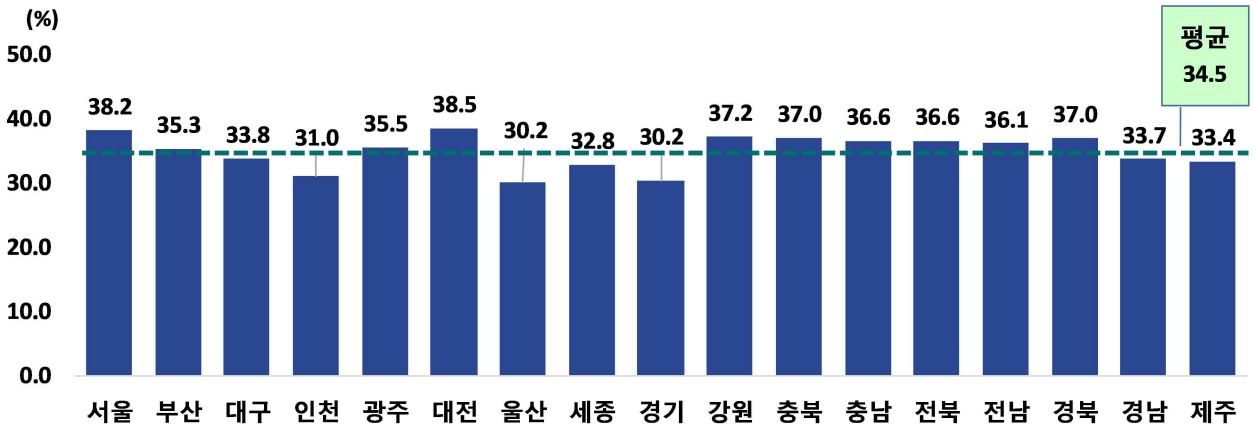
○ ’22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이고,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 19.2%, 70세 이상 18.6%, 30대 17.3%, 60대 16.7% 순임

- 여자는 60세 이상 고령층(46.2%)의 비중이 높고, 남자는 39세 이하(41.5%)의 비중이 높음

○ ’22년 지역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대전**이 38.5%로 가장 높았고, 서울(38.2%), 강원(37.2%), 충북(37.0%), 경북(37.0%) 순임

○ 세종은 39세 이하 1인가구의 비중이 50% 이상인 반면, 전남은 60세 이상 1인가구의 비중이 50% 이상임

< 지역별 1인가구 비중(2022) >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 지역별 1인가구 비중 및 연령대별 구성비(2022) >

(단위: 천 가구, %)

	전체 가구[1]	1인가구	비중	지역별 1인가구 연령대별 구성비						
				소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국	21,774	7,502	34.5	100.0	19.2	17.3	13.0	15.2	16.7	18.6
서울	4,099	1,564	38.2	100.0	26.7	22.9	12.4	11.5	12.8	13.6
부산	1,448	512	35.3	100.0	18.9	14.4	11.2	14.3	19.6	21.7
대구	1,011	342	33.8	100.0	17.9	14.9	12.2	16.2	18.7	20.3
인천	1,213	376	31.0	100.0	15.8	17.8	14.5	16.9	18.1	16.8
광주	623	221	35.5	100.0	21.4	17.4	14.1	15.5	15.3	16.3
대전	646	249	38.5	100.0	29.6	17.4	11.7	13.3	14.3	13.8
울산	454	137	30.2	100.0	14.3	16.7	15.3	18.3	19.4	16.0
세종	154	51	32.8	100.0	29.2	23.9	14.5	12.6	10.3	9.5
경기	5,407	1,634	30.2	100.0	17.3	19.8	15.3	16.4	16.1	15.1
강원	685	254	37.2	100.0	16.7	11.5	10.9	16.8	20.7	23.3
충북	705	261	37.0	100.0	19.0	15.1	11.9	16.1	17.9	20.1
충남	931	341	36.6	100.0	18.2	15.3	12.6	15.5	16.9	21.6
전북	**778**	**285**	**36.6**	**100.0**	**16.6**	**11.8**	**11.3**	**15.6**	**17.9**	**26.8**
전남	785	283	36.1	100.0	10.7	10.2	10.9	16.6	19.1	32.6
경북	1,166	431	37.0	100.0	15.1	11.9	11.5	15.9	19.2	26.5
경남	1,393	469	33.7	100.0	12.1	12.8	13.2	17.6	20.4	23.9
제주	276	92	33.4	100.0	13.9	15.1	16.7	20.5	17.4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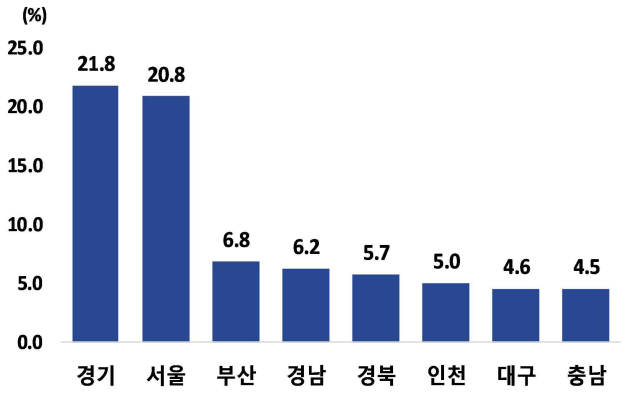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주: 1)일반가구

□ 2022년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함

○ '22년 1인가구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가 21.8%로 가장 높고, 서울(20.8%), 부산(6.8%), 경남(6.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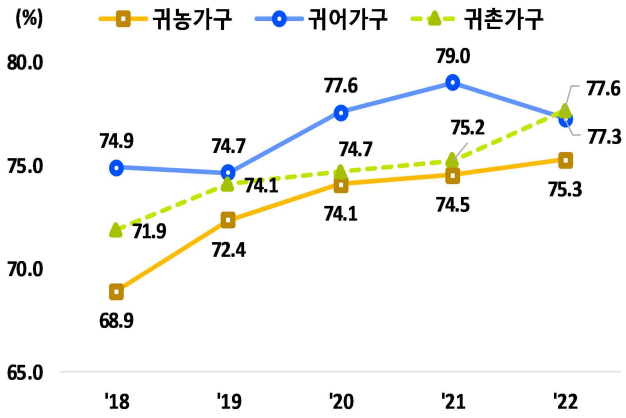
○ '22년 귀농·귀어·귀촌한 가구 4가구 중 약 3가구는 1인가구이며, 비중은 귀농 75.3%, 귀어 77.3%, 귀촌 77.6%로 나타남

< 지역별 1인가구 비중(2022, 상위8개)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귀농·귀어·귀촌 1인가구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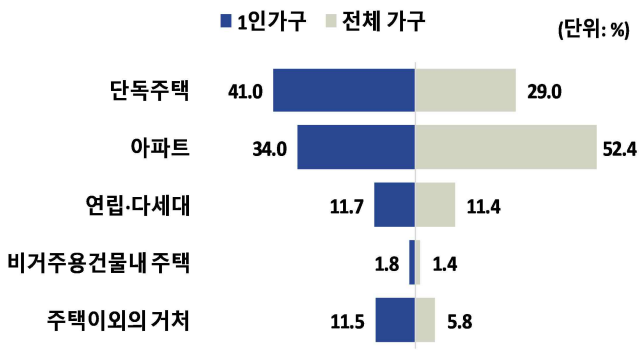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

□ 2022년 1인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41.0%), 아파트(34.0%) 순임

○ '22년 1인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 41.0%, 아파트 34.0%, 연립·다세대 11.7% 순이고, 전체 가구보다 단독주택, 주택이외 거처 주거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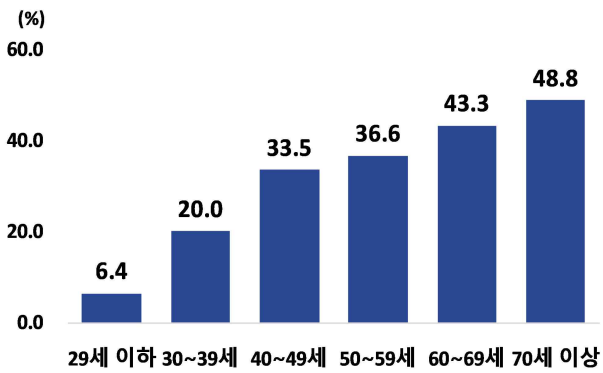
○ '22년 1인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높았고, 60대(43.3%), 50대(36.6%) 순임

< 거처종류별 비중(2022)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연령대별 1인가구 주택 소유율(2022)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기타)주거지원 프로그램

○ ’21년 1인가구가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30.8%), 월세 보조금 지원(19.6%),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17.8%) 순임

○ ’21년 1인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임차급여(37.6%),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12.1%), 공공임대주택(9.2%) 순임

<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1) >

(단위: %, %p)

	계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	공공분양 주택공급	주거상담·정보제공등	기타
전체 가구(A)	100.0	9.8	23.9	36.0	6.5	6.5	10.9	4.7	1.8	0.0
1인가구(B)	100.0	19.6	30.8	17.8	4.6	6.0	15.6	4.4	1.2	-
차이(B-A)	-	9.8	7.0	-18.2	-1.8	-0.5	4.7	-0.4	-0.6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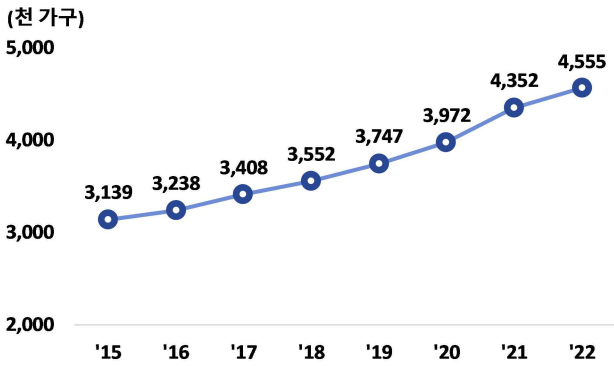
□ 2022년 취업자 1인가구는 455만 5천 가구로 전년대비 20만 4천 가구증가

○ ’22년 10월 취업자 1인가구는 455만 5천 가구로 전년대비 20만 4천 가구 증가하였음(성별 비중은 남자 56.0%, 여자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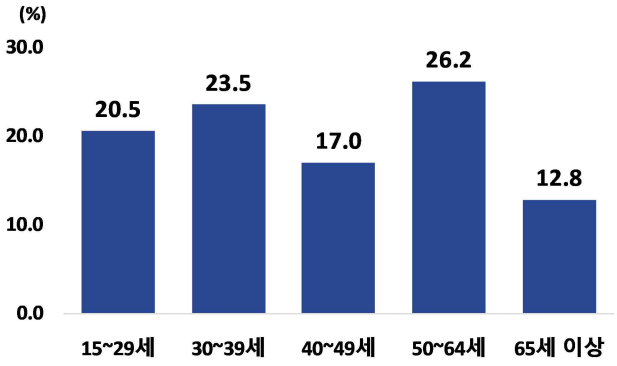
○ 취업자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은 50~64세가 26.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23.5%), 15~29세(20.5%) 순임

- 연령별 비중은 전년대비 65세 이상에서 0.4%p 증가하였고, 15~29세에 0.3%p 감소함

< 취업자 1인가구 추이 >



< 취업자 1인가구 연령별 비중(2022)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10월 기준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인구·가구

1인가구 추이

(단위 : 천 가구, %)



성·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2022)

(단위 : %)



지역·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2022)

(단위 : %)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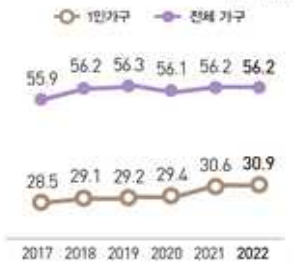
거처종류별 비중(2022)

(단위 : %)



주택 소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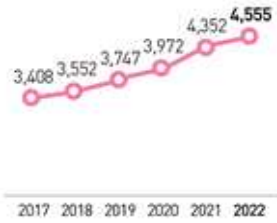
(단위 : %)



고용

취업자 1인가구 추이

(단위 : 천 가구)



1인가구 주당 평균 취업시간

(단위 : 시간)



소득·소비·자산

가구 소득

(단위 : 만 원)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2022)

(단위 : %)



건강·복지

월평균 보건지출

(단위 : 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단위 : 천 가구, %)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만족도(2023)

(단위 : %)



사회적 관계망 (도움받을 사람있음, 2023)

(단위 : %)



여가

여가활동 비중(주말, 2023)

(단위 : %)



평균 여가시간 비중(주말, 202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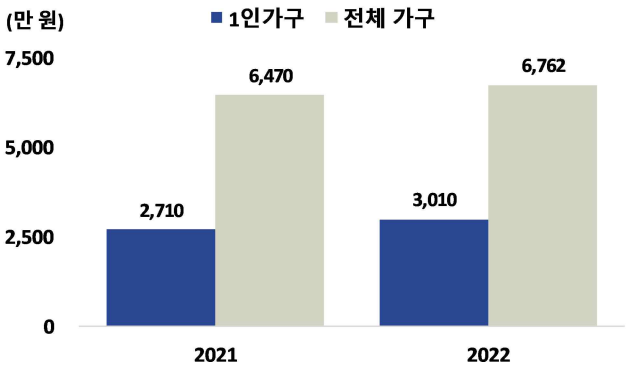
□ 2022년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44.5% 수준임

○ '22년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6,762만 원)의 44.5% 수준임

○ '22년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 1천 원으로 전체 가구(264만 원) 대비 58.8% 수준이고, 음식·숙박(17.8%), 주거·수도·광열비(17.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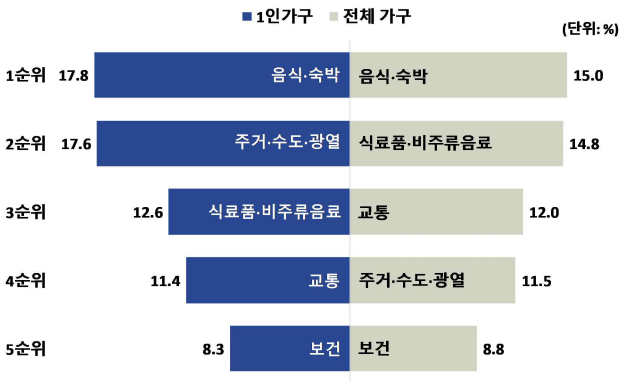
○ '23년 1인가구 자산은 2억 949만 원으로, 전체 가구(5억 2,727만 원)의 39.7%, 부채는 3,651만 원으로 전체 가구(9,186만 원)의 39.7% 수준임

< 가구 소득 >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구 월평균 주요 소비지출 비중(2022) >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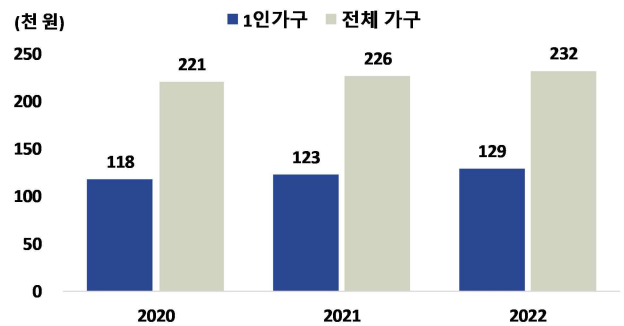
□ 2022년 1인가구의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 9천 원임

○ '22년 1인가구의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 9천 원으로 전체 가구(23만 2천 원) 대비 55.7% 수준이고, 지출 비중은 외래의료서비스(31.4%), 의약품(29.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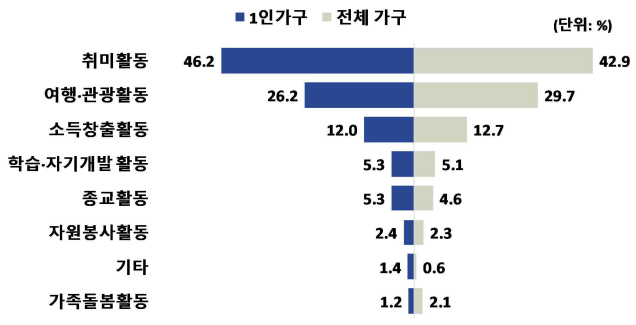
○ '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23만 5천 가구로, 수급대상 가구 10가구 중 7가구(72.6%)가 1인가구임

○ '23년 19세 이상 1인가구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활동이 46.2%로 가장 많았고, 여행·관광활동(26.2%), 소득창출활동(12.0%) 순임

< 보건지출 비용 >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2023) >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